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68-14



# MYANMAR

# 2012

##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468-14



# MYANMAR

# 2012

##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머 리 말

최근 미얀마의 민주화 조치 이후 우리기업의 對 미얀마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미얀마의 풍부한 노동력을 향유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세제나 조세행정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고, 체계화된 자료가 많지 않아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미얀마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 Contents

<b>제1장</b>	<b>미얀마 국가 개황</b> .....	1
1.	국가 개요 .....	3
2.	정치·경제 동향 .....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5
<b>제2장</b>	<b>미얀마의 조세제도</b> .....	9
1.	미얀마 세법 및 국세청 개요 .....	11
2.	소득세[개인, 법인] (Income Tax) .....	14
3.	상업세(Commercial Tax) .....	25
4.	인지세(Stamp Duties) 및 복권세(Lottery Tax) .....	34
5.	원천세(Withholding Tax) .....	35
6.	미얀마 최근 세무 동향 .....	36
<b>제3장</b>	<b>미얀마의 투자환경</b> .....	39
1.	미얀마 투자환경 개요 .....	41
2.	미얀마 투자형태 및 절차 .....	43
3.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	45
4.	미얀마 경제특구법 .....	50
5.	미얀마 부동산 관련 법제 .....	53



제4장	미얀마 진출시 애로사항	55
1.	미얀마 진출 국내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57
[부 록]		63
1.	미얀마 세무서 현황	65
2.	미얀마 품목별 상업세율표(1991)	78



2012 Myanmar >>>

# 제 1 장 미얀마 국가 개황

- 1. 국가 개요
- 2. 정치·경제 동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 국가 개요

- 위 치 :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태국 및 라오스, 북쪽은 중국, 서쪽은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함
- 수 도 : 네피도(Nay Pyi Daw)
- 인 구 : 6,119만명(2011년)
- 민 족 : 135개 민족(버마족 70%, 소수족 25%, 기타 5%)
- 면 적 : 676,563km<sup>2</sup>(한반도의 3.5배, 남한의 6배)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現 대통령 : 떼인 세인)
- 행정구역 : 7개 행정주(Division, Taing), 7개 자치주(State, Pyine)
- 화폐단위 : Myanmar Kyat (Kt)
- G D P : 545억USD (2011년)<sup>1)</sup>
- 1인당 GDP : 1,127USD (2011년)
- 물가상승률 : 4.2% (2011년)
- 환 율 : US\$1 = Kt 869 (2012년 7월 26일 기준, 시장환율)
-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36.4%), 공업(26.0%), 무역 및 서비스업(37.6%)<sup>2)</sup>
- 수 출 액 : 641억USD (2010)<sup>3)</sup>
- 수 입 액 : 959억USD (2010)

1) IHS Global Insight

2) ADB(2010기준), 한국 - 농림수산업(2.6%), 공업(39.3%), 서비스업(58.2%)

3) IMF



- 주요수출품 : 천연가스, 목재류, 콩류, 섬유류, 수산물
- 주요수입품 :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철강 및 금속제품, 섬유류, 전기 장비

## 2 | 정치·경제 동향

### □ 정치구조의 변화

- 미얀마는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49년간의 군부독재와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나, 2011년 4월 1일 새로운 민간 정부가 출범하여 정치 자유화를 도입함
- 신정부 출범으로 삼권(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이 분리되었으며, 신정부 대통령 떼인 세인은 종족간 화합, 경제 개방, 해외투자유치, 법률 개정, 국민 복지 증진 등을 개혁하기로 선포함

### □ 대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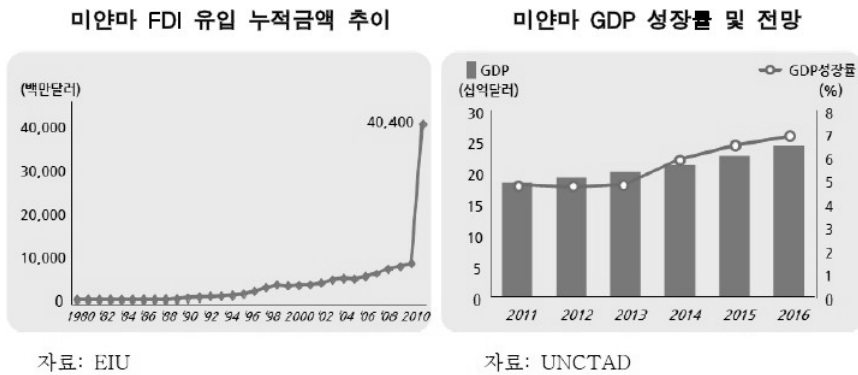
- 2012년 4월 1일부터 예전의 고정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방, 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음
- 최근의 급격한 민주화 조치로 인해 2011년 12월 미국 국무부장관 방문,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2012년 아세안(아세안+34), EAS<sup>5)</sup>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 아세안+3 :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5) East Asia Summit(동아시아 정상회의) : 아세안+3,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등 총 16개국이 참가해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

## □ 경제 동향

-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경제특구법 공포, 더웨이(Dawei) 특별경제구역법 제정으로 경제분야 개혁을 이끌고 있음
- 신정부의 경제 자유화 조치 이후 2011년 對미얀마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00%이상 증가함<sup>6)</sup>



## 3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한국과의 외교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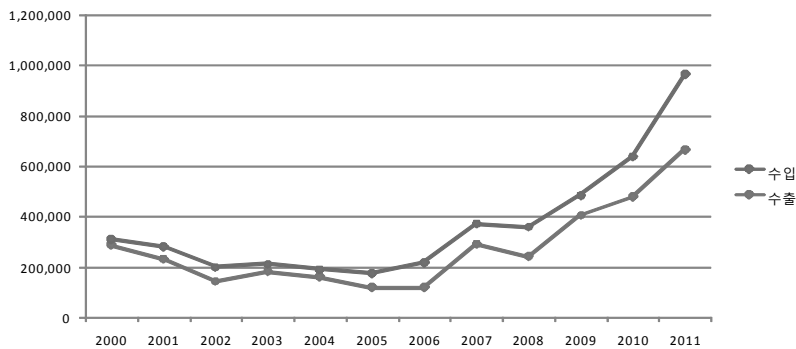
-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1961년 영사관계를 맺었고, 1975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 무역협정(1964년), 체신협정(1965년), 통신교환협정(1966년),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02년), 무역공동위 설치 MOU 문안 합의(2003, MOU는 미서명),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TOR 서명(2005년) 등을 맺어 교류하고 있음

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2.4.) Country report: Myanmar(Burma)

-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입 현황

-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현재 상호 FTA 발효중('07.6월)
- 미얀마의 폐쇄적인 경제운영과 경제제재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미미하였으나, 2006년 이후 양국의 수출입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1년 민주화 이후 수출액은 6.7억USD 달성함



### □ 미얀마 투자 현황

- 투자에 있어 우리나라는 미얀마의 4대 투자국임

- ▶ 중국, 태국, 홍콩에 이어 한국이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누적액 4위<sup>7)</sup>
- ▶ POSCO, 대우인터내셔널 등 대기업 포함 총 108개사가 진출해 있음<sup>8)</sup>
- ▶ 제조업 62개사(섬유봉제 69%), 무역·서비스업 29개사, 건설업 2개사 등
- ▶ 양곤 지역 120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외국기업 55개 사 중 한국기업이 40개 업체에 이름

7) 2011년 10월 기준, 미얀마 투자기업청(DICA), 외국인투자법 적용 이후인 1990년부터의 누적액 기준

## □ 한국 사회에 대한 호의적 자세

- 2002년 방영된 ‘가을동화’를 계기로 미얀마에서도 한류가 유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중파 3사에서 하루에 3~4편씩 한국드라마가 방영되는 등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8) 2011년 6월말 기준





2012 Myanmar >>>

## 제 2 장 미얀마의 조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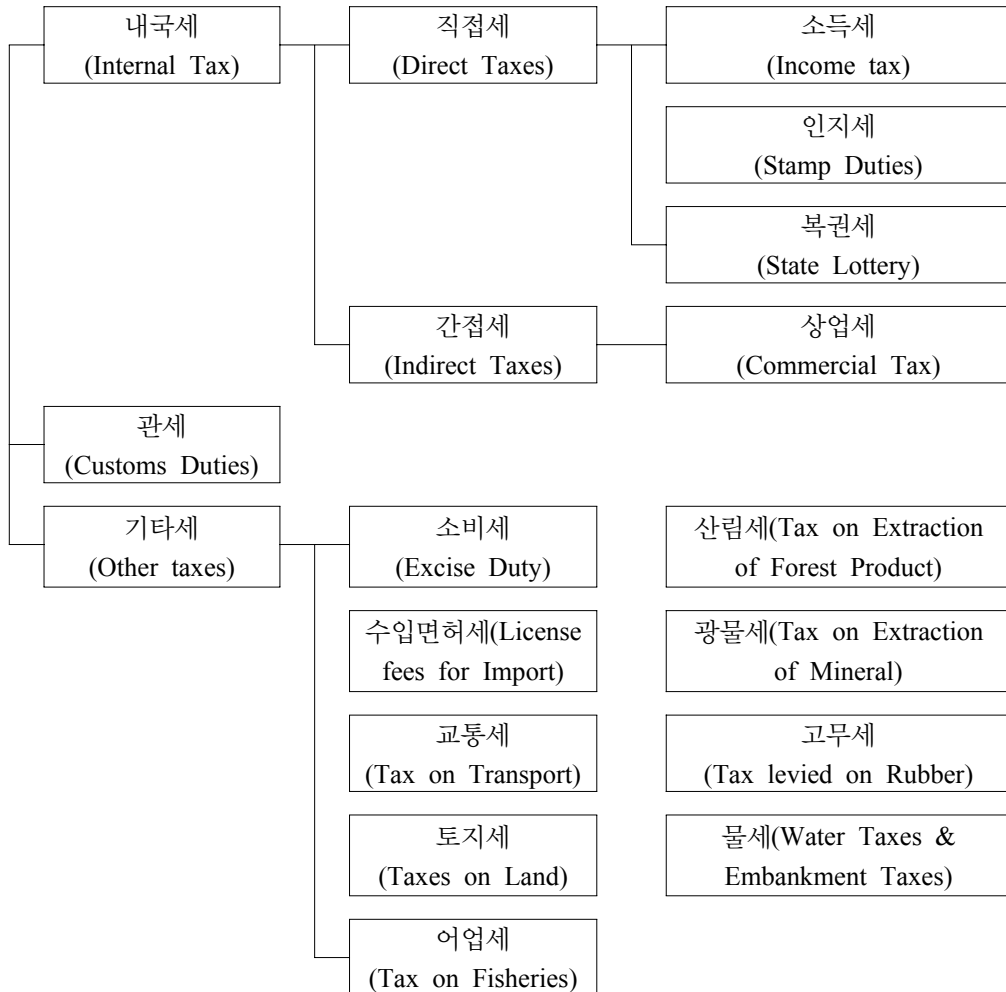
1. 미얀마 세법 및 국세청 개요
2. 소득세[개인, 법인] (Income Tax)
3. 상업세(Commercial Tax)
4. 인지세(Stamp duties) 및 복권세(Lottery Tax)
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미얀마 최근 세무 동향





# 1 | 미얀마 세법 및 국세청 개요

## □ 세법 구조



## □ 역사적 배경

- 영국의 식민 체제인 1922년에 체계적인 미얀마 조세 시스템 도입
  - 버마 소득세법(Burma Income Tax Act, 1922) 최초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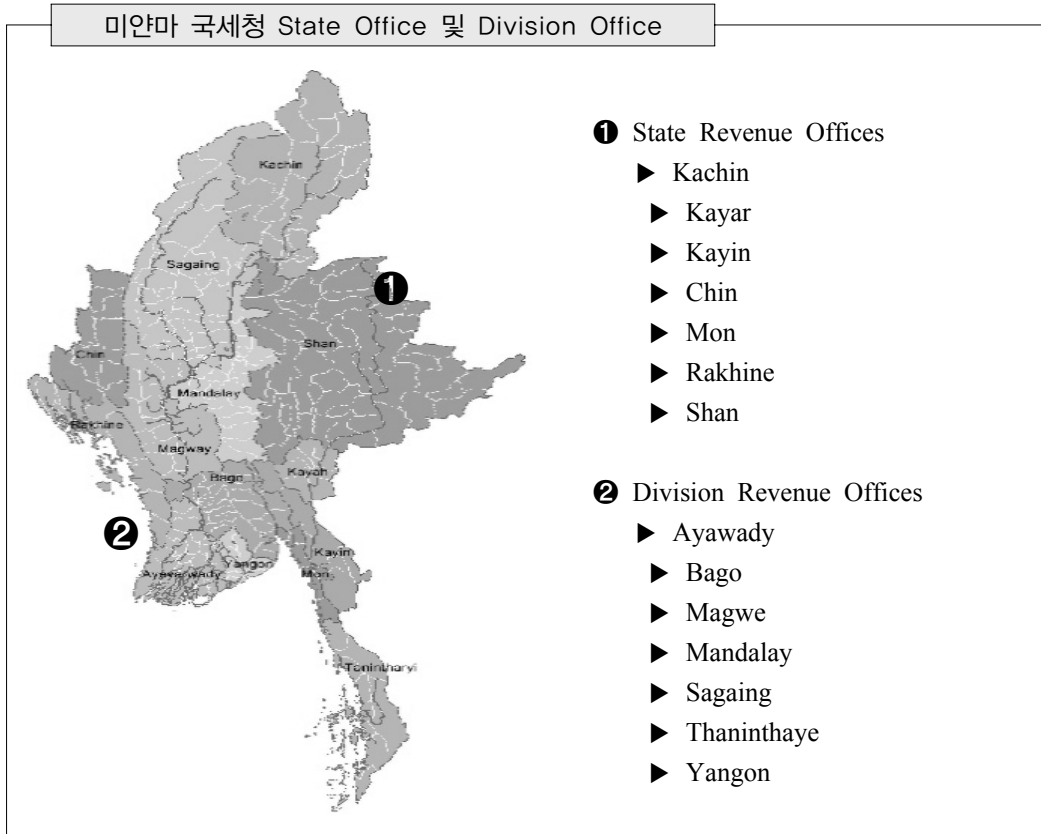
- 사회주의 경제 체제 중에 소득세법(Income Tax Law, 1974), 수익세법(Profit Tax Law, 1976)과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 and Service Tax, 1976)을 각각 공포
-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던 1988년에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을 폐지하고 상업세법(Commercial Tax Law, 1990)을 제정 · 공포
- 수익세법은 2011년 폐지됨

## □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 IRD)

- 목표
  - 조세 제도의 개선 및 강화
  -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 확대
  - 세금 시스템의 현대화
- 조직



○ State Office, Division Office 및 세무서 현황



□ 미얀마 세법의 특징

-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년 개정세법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공포하거나 관련 훈령·지침(Orders)을 공고하고 있음
- 미얀마의 세법은 조항이 복잡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소수 민족들과의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법은 가능한 간단하게 제정하고자 했던 미얀마 정부의 정치 환경을 반영함



○ 미얀마 국세청(IRD)이 재정수익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kyat in billion)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국가 세입	298.502	472.178	724.976	896.241	1063.585	1098.030
IRD 세금징수	265.186 (88.84%)	448.156 (94.91%)	676.774 (93.35%)	838,391 (93.55%)	987.925 (92.88%)	1037.364 (94.47%)

\* Country Report by Kyaw Ye' Tun(Assistant Director in IRD)

## 2 | 소득세[개인, 법인] (Income Tax)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

구 분	정의	납세의무
거주시민 (Resident Citizen)	-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얀마 시민	전세계소득 (단,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하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은 미얀마 내 발생 소득에 한함)
거주 외국인 (Resident Foreigner)	1) 미얀마에서 소득년도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 2) 미얀마 회사법 또는 다른 현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인에 의해 소유된 회사 3) 회사가 아닌 개인들의 단체로서, 통제, 경영, 의사결정이 미얀마 내에서 행해 지고, 외국인들로 전부 또는 일부 구성된 단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Foreigner)	1)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소득년도에 미얀마에서 183일 미만 거주) 2) 미얀마 회사법 또는 다른 현행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회사 3) 통제, 경영, 의사결정이 미얀마 내에서 행해지지 않는 단체	국내원천소득

※ 미얀마에서 등록된 외국 회사의 지점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과세

※ 소득세법에서 “association of persons(개인들의 단체)”는 동업자, 합작투자, 회사(companies), 개인에 의해 형성된 조합, 협동조합, 국영기업을 포함함

## □ 과세기간(Income Year)

- 소득세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함

## □ 과세 소득의 분류

### ○ 급여 소득(Salaries Income)

- ▶ 개인납세자가 지급 받는 급여(급여, 상여, 보너스, 연금, 수수료, 수당 등 급여 성격의 지급액을 모두 포함)
- ▶ 자동차 수당, 주택 수당 등 각종 부가 수입
- ▶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지불한 금액
- ▶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그 이자 (단, 정부공제기금에 종업원이 직접 지급한 금액은 제외)

### ○ 전문직 소득(Profession Income)

- ▶ 전문직 기술을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수령한 소득
  -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 작가, 선생님 등
- ▶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소득에서 공제 가능
  - \* 설비투자(자동차, 에어컨, 발전기 등), 개인적 지출(휴가를 위한 여행경비, 자녀수업료 등), 업무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비용(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비용 등,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은 공제 불가

### ○ 사업 소득(Business Income)

- ▶ 특히, 이익을 얻기 위한 상품의 판매를 포함
  - \*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소득에서 공제 가능
  - \* 고정자산 상세 명세 제출 필요. 설비투자 비용, 개인적 지출, 업무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 불가
- ▶ 소득신고 시 회계보고서 첨부 필요(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부동산임대 소득(Property Income)

- ▶ 토지, 건물 등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
- ▶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은 실제 수령한 임대료나 소득세 과세당국에 의해 평가된 매년 임대가격에서 공제 가능
  - \* 설비투자 비용, 개인적 지출, 부적절한 지출은 공제 불가

○ 자본이득(Capital Gains)

- ▶ 고정자산(Capital assets)의 판매·교환·이전으로 실현된 소득
  - \*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유사 금융상품을 말함
-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과 유사
- ▶ 한 가지 이상의 고정자산을 판매·교환·이전하는 자는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세무공무원에게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Income Tax Rules 5.(a))

○ 발견되지 않은 소득원 (Undiscovered Sources of Income)

- ▶ 취득 원천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부동산 또는 동산과 관련되어 실현된 소득

○ 기타소득 (Other Sources of Income)

- ▶ 앞에 언급된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 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은 공제 가능
  - \* 설비투자 비용, 개인적 지출, 부적절한 지출은 공제 불가

□ 적용할 세율(Applicable Tax Rate)

1) 거주 미얀마인과 거주 외국인이 짜트화로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	세율(%)
1 ~ 500,000짜트	1%
500,001 ~ 1,000,000짜트	2%
1,000,001 ~ 1,500,000짜트	3%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	세율(%)
1,500,001 ~ 2,000,000짜트	4%
2,000,001 ~ 3,000,000짜트	5%
3,000,001 ~ 4,000,000짜트	6%
4,000,001 ~ 6,000,000짜트	7%
6,000,001 ~ 8,000,000짜트	9%
8,000,001 ~ 10,000,000짜트	11%
10,000,001 ~ 15,000,000짜트	13%
15,000,001 ~ 20,000,000짜트	15%
20,000,001짜트 ~	20%

※ 특례 : 비거주 외국인이 짜트로 받는 급여는 35% 단일세율 적용 (Reference : Notification No. 115/2006, dated June 5, 2006.)

2) 국가에서 보증하는 프로젝트나 거래에 참여하여 짜트로 받는 외국인 개인

○ 짜트로 얻은 총소득의 20% 세율

(Reference : Notification No.115/2006, dated June 5, 2006.)

3) 국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나 거래에 참여한 외국에서 설립된 개인들의 단체

구 분	짜트화로 수령시 세율	외화로 수령시 세율
국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나 거래에 참여한 외국에서 설립된 개인들의 단체 <sup>9)</sup>	30%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Reference : Notification No.115/2006, dated June 5, 2006.)

9) 소득세법에서 “개인들의 단체(association of persons)”는 동업자, 합작투자, 회사, 개인에 의해 형성된 조합, 협동조합, 국영기업을 포함함





#### 4) 비거주 외국인

구분	세율	납부방법
비거주 외국인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외화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도 외화로 납부하여야 함

(Reference : Notification No.115/2006, dated June 5, 2006.)

※ 미얀마에서 등록된 외국 회사의 지점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로 과세됨

#### 5) 전문직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발견되지 않은 소득원, 기타소득과 비거주 외국인

과세 소득	세율
~5,000짜트	5%
5,001~10,000짜트	10%
10,001~20,000짜트	11%
20,001~30,000짜트	12%
30,001~40,000짜트	14%
40,001~50,000짜트	15%
50,001~80,000짜트	16%
80,001~110,000짜트	17%
110,001~150,000짜트	18%
150,001~200,000짜트	19%
200,001~300,000짜트	20%
300,001~400,000짜트	22%
400,001~1,000,000짜트	25%
1,000,000~2,000,000짜트	35%
2,000,001짜트~	40%

\* Reference : Notification No.116/2006, dated June 5, 2006.

6) 미얀마 회사법 또는 특별한 회사법 하에서 미얀마에서 등록된 법인

- 짜트로 받은 총소득의 30% 세율

(Reference : Notification No.115/2006, dated June 5, 2006.)

7) 국유 경제 조직

- 총소득의 30% 세율

(Reference : Notification No.118/2006, dated June 5, 2006.)

8) 민간부문·협동조합·국유 경제 조직·비거주 외국인의 고정자산 판매 등 자본이득

- 10% 세율로 과세(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40%)

(Reference : Notification No.120/2006, dated June 5, 2006.)

- 자본이득 결정 시 총판매액에서 다음을 공제함 [Income Tax Rule 5 (c)]

-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후의 순재산액과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판매·교환·이전에 든 비용

-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작을 경우 세무공무원은 거래 가액을 시가로 대체할 권한을 가짐 [Income Tax Rule 5 (f)]

9) 석유와 가스부문 고정자산에서 실현된 자본이득

- 고정자산(유형자산, 지분, 소유권 등)을 외화로 판매한 경우에는 외화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적용할 세율

이 익	세 율
1억달러까지	40%
1억~1억5천달러까지	45%
1억5천달러 초과	50%

○ 감가상각비 상각률

구 분	공장, 기계, 파이프라인	측량장비	수직드릴장비
상각률	연5%	연10%	연20%

(Reference : Notification No.121/2006, dated June 5, 2006.[다른 통지와는 다르게, 이 통지는 2000.6.15.부터 소급적용됨])

10) 외화 수입(미국 달러 또는 FEC<sup>10</sup>)뿐인 경우의 특례

○ 1997년 12월 이후, 과세대상 소득이 외화 기준 소득뿐인 경우, 외국 국적의 거주자는 15%, 미얀마 국적의 거주자는 10%의 원천 과세로 하는 간편법이 적용된다.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하에서 공표된 허가 하에서 운영되는 기업들로부터 수령한 거주 외국인은 외화로 수령한 미얀마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외화 총수령액의 10%를 소득세로 납부함.

11)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민간부문 회사와 협동조합

○ 총소득의 30%로 소득세가 부과됨 [봉제기업은 제외]

(Reference : Notification No.126/2006, dated June 5, 2006.)

\* ‘민간부문 회사(Private-Sector Companies)는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과 미얀마 시민투자법(Myanmar Citizens Investment Law) 하에서 설립된 회사 양쪽을 포함함.

12) 외화를 획득하는 봉제기업(CMP, Cutting Making Packing)

○ 소득세법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화 소득의 10%를 소득세로 납부 (최대치이고, 고정세율이며, 다른 세금은 적용되지 않음)

(Reference : Notification No.115/2006 and No.123/2006, dated June 5, 2006.)

10) 태환권 (Foreign Exchange Certificate)

- \* 봉제업에 부과하는 소득세 10%를 2%로 6개월('11.8.19~'12.2.18)간 감세 실시 (짜트화 강제로 인한 피해 회복 목적)

### 13) 외환에 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지위에 관계없이 1) 생산된 재화의 판매 2) 어떤 종류의 사업을 수행 3)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외화로 벌어들인 총외화수입의 2%를 소득세로서 외화로 징수 (1999년 1월부터 시행)

- \* 단, 봉제기업(CMP)과 '미안마 시민 투자법' 하에서 공표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기업의 소득에는 외환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2%는 적용되지 않음

#### 외화수입에 대한 소득세 적용사례

- ▶ 만약, 미안마인이 거주자이든지 비거주자이든지 외화로 급여를 받는다면, 그 급여의 10%를 소득세로 지불해야 함.
- ▶ 만약, 그가 급여 외에 추가로 1) 생산된 재화의 판매 2) 어떤 종류의 사업을 수행 3)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외화로 수입을 얻는다면, 그는 그 소득에서 2%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 과세할 수 없는 소득

- 급여소득(salary)이 연간 1,440,000짜트에 미달하는 경우
- 전문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발견되지 않은 소득원, 기타소득 하에서 연간 총소득이 1,200,000짜트에 미달하는 경우
- 고정자산 처분거래의 1년간 총거래액이 5,000,000짜트에 미달하는 경우 등

## □ 소득세 산정방법

- ▶ 총수입액 - 총지출액 = 소득세 계산목적 소득액(순이익)
- ▶ 총수입액은 매출 또는 자본이득에 의해 유입된 금액
  - 총수입액 계산시 공제 항목
    - 종교 및 자선적인 목적으로 받은 금액
    - 보험(재해, 생명)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 연금으로 받은 금액 등
- ▶ 총지출액은 수입을 발생하는 데 들어간 제 경비이며, 감가상각비 인정

## □ 허용된 감가상각률

구분	건물	가구	기계, 공장	기계장비	수로수송	차량	잡화
상각률	1.5% ~10%	5% ~10%	5% ~10%	2.5% ~20%	5% ~10%	12.5% ~20%	10% ~20%

## □ 소득공제

- 근로소득 기본공제
  - ① 연간 소득금액의 20% 공제
  - ② 연간 10,000,000짜트를 한도로 함
- 배우자 공제
  - ① 공제액 : 연간 300,000짜트
  - ②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한해 공제 가능
- 자녀 공제
  - ① 공제액 : 연간 1인당 200,000짜트
  - ② 직계비속, 입양자녀, 사실상 양육하는 자녀 포함
  - ③ 미혼의 소득이 없는 자녀로서 18세 이하이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 공제 가능

- 보험료 공제 : 납세자나 배우자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료
- 비거주자가 외화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공제 적용을 배제함

## □ 계산 사례

### 미얀마 외국인 거주자 근로소득 계산 사례

- ▶ 홍길동은 외국인으로 미얀마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에 해당
- ▶ 홍길동은 매달 2,000USD를 급여로 받음
- ▶ 급여외 보너스를 2012.1월 500USD 지급받았으며, 기타 수당으로 매달 150USD 지급 받음
- ▶ 배우자는 성춘향으로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은 없음
- ▶ 자녀 3명(19세, 17세, 15세)이 있으며, 자녀1은 결혼하였으며, 자녀2, 자녀3은 학생으로 별도 소득은 없음
- ▶ 매월말 평균 환율 : 1USD = K 820

개인소득세 계산	금액
<b>근로소득금액</b> 26,300USD × K820	<b>21,566,000 Kyat</b>
총수입	<b>26,300 USD</b>
① 급여 (2,000USD×12개월)	24,000 USD
② 상여금	500 USD
② 기타 수당 (150USD×12개월)	1,800 USD
<b>소득공제금액</b>	<b>(5,013,200 Kyat)</b>
① 기본공제 (K21,566,000×20%)	4,313,200 Kyat
② 배우자공제	300,000 Kyat
③ 자녀공제 (K200,000×2명)	400,000 Kyat
<b>과세표준</b>	<b>16,552,800 Kyat</b>
<b>산출세액 (15%)</b>	<b>1,582,920 Kyat</b>
<b>납부세액</b> 1,582,920Kyat ÷ K820	<b>1,930 USD</b>



## □ 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폐업자는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본이득에 대한 신고서는 관련 자산의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매달 소득세를 공제하여 공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고용주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6월 30일까지) 연간 급여지급 명세서(Annual Sala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외화로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은 외화로 납부하여야 함

## □ 소득세율 요약

- 법인 소득세율

구 분	세 율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30%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특별 허가를 통해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법인	
외국법인(외국 법인 지점 포함)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자본이득	10%
- 거주기업	
- 비거주기업	
	40%

○ 개인 소득세율

구분	세율
급여 - 일반적인 경우(짜트화로 수령) - 특별 허가로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외국인 -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 비거주자	1%~20% 초과누진세율 20% 15% 35%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자본이득 - 거주자 - 비거주자	10% 40%

**3** | **상업세(Commercial Tax)**

□ 개요

- 상업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1990년 3월 법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상업세(수출세<sup>11)</sup>)가 부과됨
- 수입품의 경우 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데, 자국산업 보호 등 목적으로 0~200%까지 세율로 부과

\* 세제 개혁 발표('12.3.26)로 '12.4.1. 부터는 0~100% 세율로 부과

11) 미얀마 정부는 1999년 1월 이후,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서 5%의 상업세와 2%의 원천소득세 등 총 7%를 수출세 명목으로 징수(조세법에 따른 조치는 아니며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부과). 단, 봉제업의 경우 8%의 상업세와 2%의 원천소득세 등 총 10% 부과.



## □ 과세대상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
-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

## □ 납세의무자

- 상업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본인이 소유한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화를 생산하게 한 후 판매하는 자
    - 보수,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육로나, 바다 또는 항공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자
- \* 정부 기관, 국유 기업 및 공장, 무역, 서비스 기업, 개발위원회, 협동조합, 개인, 합병된 조직이나 단체, 법인, 파트너십과 합작법인 등을 포함함

## □ 사업자등록

- 상업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의 개시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음

## □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재화도 포함됨
- 용역의 제공은 보수, 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역업,

엔터테인먼트업, 호텔, 숙박, 음식업, 관광업 및 정부가 수시로 운영하는 서비스 기업이 포함됨

- 다만, 종교 또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종교 목적이거나 자선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되거나 판매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적용하지 않음

## □ 과세표준

- 판매 수익금은 재화를 판매하고 받았거나 받게될 현금, 외상이나 기타 사전판매 후 이연하여 받을 금액을 의미함
- 물품 교환의 경우는 그렇게 행해질 때 결정되는 가치를 의미하며 물건의 포장 재료에 사용되는 포장 비용이 포함된 가액임
- 용역의 대가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았거나 받을 금액임
- 수입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가액 및 하역에 발생된 비용과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임

## □ 상업세 면제

- 정부는 특정 종류의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정부는 상업세가 부과되지 않을 판매 또는 서비스 금액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
  - 외환으로 받는 판매수익 또는 총수령액에는 비부과되는 경우가 없음
  - 제조업에서 재화에 대해 240,000짜트, 재화의 구매와 판매로 구성되는 무역업에서 300,000짜트, 운송업에서 180,000짜트까지는 상업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신설 법인 관련 상업세 면제
  - 새로 건설되는 시설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된 기계, 설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사업 개시연도를 포함하여 연속되는 3개년도 범위 내에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고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종류의 재화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 세율

- 상업세법에 첨부된 세율표(1~7)에 따라 품목별로 0~200% 세율로 부과됨  
**【부록 : 품목별 상업 세율표(1991)】**
    - 세율표(1) : 65개 필수·기초 상품들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세율표(2) : 31개 아이템, 5% 상업세율
    - 세율표(3) : 120개 아이템, 10% 상업세율
    - 세율표(4) : 88개 아이템, 20% 상업세율
    - 세율표(5) : 50개 아이템, 25% 상업세율
    - 세율표(6) : 30~200% 상업세율
    - 세율표(7) : 서비스에 적용되는 상업세율
- \* 부록(상업 세율표)은 1991년 자료로, 세율표는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실제적용시에는 현행세법 확인이 필요함

## □ 신고·납부 의무

-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매월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매 3개월의 월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 과세대상 거래를 확인한 세무서장은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 3개월마다 신고하도록 통지 가능
- ▶ 세무서장이 과소납부를 확인한 경우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추가 고지함
- ▶ 기납부한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함

- 납세의무자는 연간 신고서를 각 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 과세대상 거래를 확인한 세무서장은 매년 신고하도록 통지 가능
- ▶ 무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을 정하여 고지 가능함
- ▶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 결정 및 경정

- 세무공무원은 관련 과세연도 말 이후 3년 이내에 조세 회피와 관련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에는 언제든지 결정·경정 가능함
-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으로 판매 또는 서비스 수익이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상업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은 이미 받은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계과세 가능

- ▶ 판매 또는 서비스 수익금이 계좌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거로부터 정확히 유추될 수 없는 경우
- ▶ 납세자가 매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계좌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및 관련인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필요한 과세자료 및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 □ 수시 부과 사유

- 국외이주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경우
-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경우
- 고정세율로 매월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

## □ 환급

- 만약 납세자가 지불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초과한다는 입증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무공무원이 초과로 지불한 세금을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 가산세 및 처벌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납부세액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함

- ▶ 미등록
- ▶ 사업 개시 통지를 보내지 않는 경우
- ▶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 납세에 대한 조사 출두 통지 준수를 못한 경우
- ▶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판매 또는 서비스 수익을 고의로 잘못 신고하고, 사기 의도로 잘못된 장부나 회계 정산서를 제공한 경우 추가납부세액과 동등한 가산세를 부과받으며, 기소되어 3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0짜트까지 벌금을 부과 받거나 양벌에 처해질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자는 당국의 처벌(제재)로 기소 되고, 3년에서 7년 이내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 ▶ 뇌물을 주고 받기 위해 시도하는 경우
- ▶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을 사주하는 경우
- ▶ 부정한 또는 사기 의도로 이 법률에 의해서 수여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 □ 수정신고

- 세금 회피를 위해 과소 신고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 가능
- 수정신고기간 내에 수정 신고한 자는 추가 납부 세액과 동등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수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자는 추가 납부 세액과 동등한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기소되어 1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천짜트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양벌에 처해질 수 있음

## □ 세무공무원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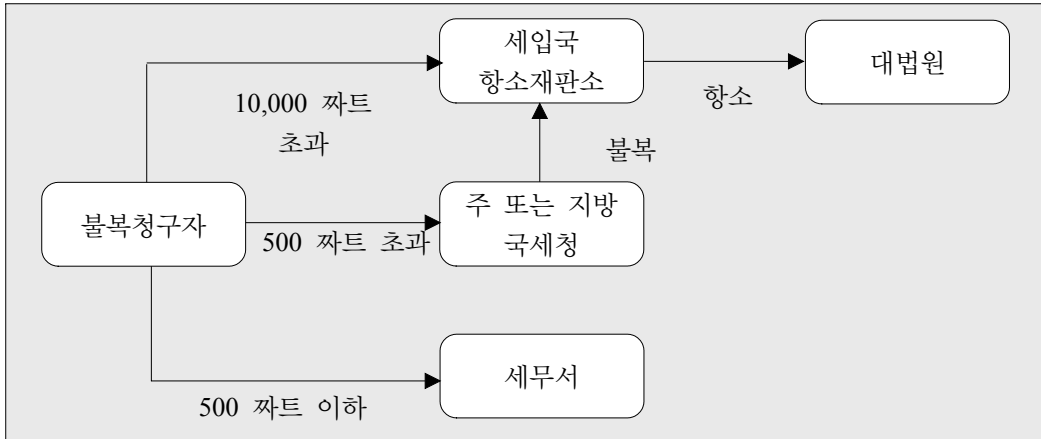
- 세무공무원은 과세 및 불복과 관련하여 건물, 장소, 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장부나 문서에 식별 마크를 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세무공무원이 이 법률에 근거하여 회계장부나 문서들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주 또는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

- ▶ 어떤 건물, 장소, 사업소에 들어가서 찾을 권리
- ▶ 해당 장소에서 발견되는 회계장부나 문서를 압수할 수 있는 권리

- 압수수색의 경우에 관련된 납세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2명의 증인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나 문서를 압수할 때 압수목록을 발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회계장부나 문서는 과세나 불복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해서 보관함

## □ 불복제도

### ○ 불복절차



- ① 세금 500짜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 또는 지방 국세청
- ② 세금 10,000짜트를 초과하는 경우와 주 또는 지역 세무공무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입국 항소 재판소
- ③ 세입국 항소 재판소의 결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 ○ 불복청구기한

- 납세자는 납세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명령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불복 제기
- 기한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기간은 제외

- ▶ 항소가 제기된 명령의 사본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
- ▶ 세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항소할 허락을 얻기 위한 기간

- 주 또는 지역 세무 공무원, 세입국 항소 재판소 또는 대법원은 만약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1개월 기간제한을 완화하고, 항소를 인정할 수 있음

### ○ 불복절차 결정

- 항소를 처리할 때에는 항소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함

- 세금이 500짜트 이내인 경우 지역 세무서 결정이 최종이 됨
- 세금이 10,000짜트 이내인 경우 주 또는 지방국세청 결정이 최종이 됨
- 세금이 10,000짜트를 초과하고 세입국 항소 재판소의 결정에 발생된 법률적인 의문이 없으면 세입국 항소 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이 됨

#### □ 불복에 대한 경정·결정

-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지역 세무서장, 주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조사 실시하거나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제한됨
  - 불복이 주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되어 있거나, 불복을 위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
  - 납세자의 체납이 있는 경우

#### □ 기타

-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이나 연장기간 내에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징수함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외환인 경우 정부는 외환으로 상업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
- 상업세법 하에서 납세의 목적을 위해 회계 장부는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4 | 인지세(Stamp Duties) 및 복권세(Lottery Tax)

### □ 인지세

- 인지세는 법원 및 일반행정용 인지 판매로 징수됨
- 법원용 인지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유언장, 고소장, 공증, 관리승계 인증서,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서류들에 의해 징수되며, 법정 문서 종류에 따라 종가세 또는 고정액수로 징수됨
- 일반행정용 인지세는 사용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 징수됨

### □ 복권세

- 1938년 도입된 “아웅 바 레이 복권(Aung Ba Lay State Lottery)”은 미얀마 유일의 공식 복권임
- 복권은 매달 발행되며, 복권 1등 상금은 50,000,000 짜트(2005.12월 기준)
- 복권 판매 수익금의 60%는 상금으로 지급, 40%는 복권세로 징수됨

## 5 원천세(Withholding Tax)

### □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소득의 종류	세율	
	거주 국민,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이자	-	15%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15%	20%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3%	3.5%
외국사업가,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	2.5%	3%

- 이자
  - 거주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없으며,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15%.
- 면허, 상표, 특허권 등의 사용을 위해 지불된 로열티
  - 거주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15%.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20%.
-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 거주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3%.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3.5%.
- 외국사업가,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
  -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2.5%.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불할 때 공제할 세율은 3%.
- 배당금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6 | 미얀마 최근 세무 동향

### □ 세제 개혁 발표(2012.3.26.)

- 미얀마 국세청은 소득세와 상업세에 대한 세제 개혁(시행일 : '12.4.01.)을 담은 16개의 분리된 통지를 공식적으로 발표('12.3.26.)

### □ 세제 개혁 주요내용

- 소득세율(법인, 개인) 인하
  - 법인 소득세율을 종전 30%에서 25%로 축소(Notification No.111/2012, 2012.3.15.)
  - 외국회사의 지점은 종전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세금이었으나 35%의 고정율로 변경[만약, 지점이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 하에서 투자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25% 고정율 적용]
  - 현지 통화로 사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는 5~40% 누진세율에서 2~30% 누진세율로 세율인하
  - 현지 통화로 받는 급여소득은 종전 3~30% 누진율에서 1~20% 누진율로 세율인하(Notification No.107/2012, 2012.3.15.)
- 상업세율 인하
  - 각각 5~25% 율로 규정되었던 상업세법(1990)의 세율표(2)에서 세율표(5)까지 실린 모든 항목들은 이제는 5% 고정률로 상업세 대상(Notification No.115/2012, 2012.3.15.)
  - 각각 30~200% 율로 규정되었던 상업세법(1990)의 세율표(6)에 실린 재화는 이제는 8~100%까지 각기 다른 상업세율이 적용됨 (Notification No.116/2012, 2012.3.15.)

- 상업세법(1990) 세율표(7)에 실린 서비스는 5~30%까지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단일율인 5%로 인하. 또한, 중개서비스, 조경, 수선, 빌딩디자인 서비스, 광고, 촬영서비스, 법률과 감사서비스가 현재는 세율표(7)의 상업세 부과대상(Notification No.117/2012, 2012.3.15.)
- 상업세법(1990) 세율표(1)에서 세율표(6)까지 실린 수출된 재화는 석유, 천연가스, 티크 통나무, 옥과 귀한 보석들, 활엽수를 제외하고 상업세 면제(Notification No.121/2012, 2012.3.15.)





2012 Myanmar >>>

## 제 3 장 미얀마의 투자환경

1. 미얀마 투자환경 개요
2. 미얀마 투자 형태 및 절차
3.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4. 미얀마 경제특구법
5. 미얀마 부동산 관련 법제



# 1 | 미얀마 투자환경 개요

## □ 투자환경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원유, 천연가스 등 고부가가치 자원 뿐만 아니라 우라늄, 구리 등 한국의 6대 전략광물 매장량이 상당하며, 과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및 투자 회피로 미개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큼
- 물류 인프라의 전략적 요충지
  -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연결하고 있어 철도망 구축시 아시아의 중요 물류 허브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내륙화물이 말라카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미얀마를 직접 통과할 경우 최소 3,000km 이상 거리 단축 가능<sup>12)</sup>



- 저임금의 노동력 보유
  -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제조생산시설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이전하고 있음

12) Seri 경제포커스 (2012.5.8)



- 미얀마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중국 임금의 1/5 수준이나 문맹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아 임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함<sup>13)</sup>

□ 미얀마 국가별 외국인 투자 누적총액(2011.10월 기준)<sup>14)</sup>

투자국	기업수	누적액(백만USD)	비율(%)
중국	32	9,603	26.62
태국	61	9,568	26.52
홍콩	38	6,308	17.49
<b>한국</b>	<b>47</b>	<b>2,939</b>	<b>8.15</b>
영국	51	2,660	7.37
싱가포르	74	1,819	5.04
말레이시아	38	975	2.7
프랑스	2	469	1.3
미국	15	244	0.68
인도네시아	12	241	0.67
기타	84	1,252	3.36
합계	454	36,078	100.0

13) 일본무역진흥기구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일본기업의 제조업 평균 연봉은 중국 5,765USD, 인도네시아 3,980USD, 베트남 2,196USD, 캄보디아 1,179USD, 미얀마 1,137USD로 나타남

14) 미얀마 투자기업청(DICA) 1990년 이후 누적액임

## 2 | 미얀마 투자형태 및 절차

### □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up>15)</sup>

-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할 수 있으며 100% 단독 투자 또는 합작 투자 가능
- 합작투자시 파트너는 개인, 민간 기업, 미얀마 정부 기업 등 자격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자본 비율은 35%이상이어야 함
-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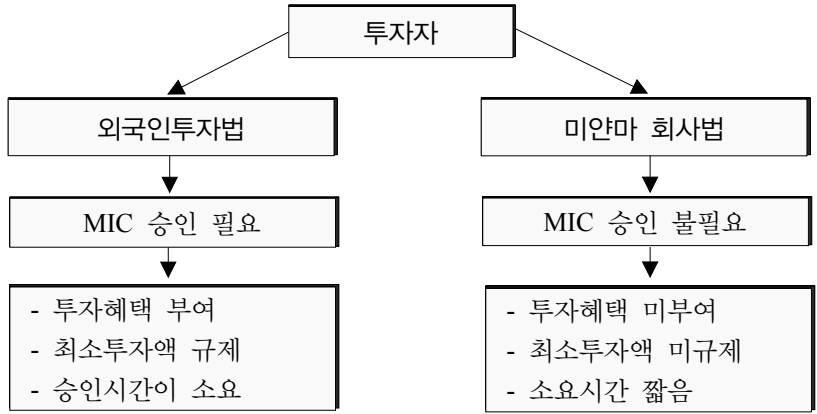
- ▶ 발기인 : 2인 이상
- ▶ 주 주 : 50인 이하
- ▶ 이사회 : 최소 2인 이상
- ▶ 구성원 변경 시 14일 이내 회사등록사무실(CRO)에 통보
- ▶ 지분 소유에 대한 변경 시 1개월 이내 CRO에 통보

### □ 지점 및 연락사무소

-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y Act)에 따라 회사 등록 가능
-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 등록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함

15)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y Act)에 따르면 회사의 형태로는 주식에 의한 유한책임 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보증에 의한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및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가 있으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외국인투자회사는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만을 회사 형태의 투자 조직으로 명시하고 있음

### □ 미얀마 투자형태별 흐름도



### □ 주식(지분) 양수도 관련 사항

- 미얀마법상 주식(지분)은 동산으로 간주함
-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주식(지분)을 표창하는 주권의 발행도 가능
- 주권에는 개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주주의 이름, 주식(지분)수가 기재되며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주권은 주식(지분)에 대한 주주의 소유권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음
- 각 회사는 주식(지분)발행 또는 주식(지분)양도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지분)증서를 발행해야 하고, 소정의 법원 인지를 첨부해야 함
- 일반적인 주식(지분)양도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의 주식(지분)양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미얀마법상 외국인이 미얀마인에게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미얀마인으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제한됨

-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는 주식(지분)양수도과 관련하여 MI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며, CRO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3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 □ 개관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은 1988년 제정됨
- 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 회수,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MIC)가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관리 전반에 걸친 관리, 통제를 수행함
- 외국인투자법에 외국인투자 가능 항목이나 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1989년에 발령된 정부지침(Notification No.1/89 dated May 30, 1989) 형식으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항목을 규정

- ▶ 농축수산업, 임업, 광업
- ▶ 산업(식품, 섬유, 개인 용품, 가정용품, 가죽 제품, 운송 수단, 건축자재, 펄프 종이, 화학, 약품, 철강, 기계, 공장)
- ▶ 건설, 운송/통신
- ▶ 무역(호텔, 관광업 포함)

####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방법

-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은 100% 독자투자 가능
- 미얀마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최소 투자 금액

- ▶ 제조업의 경우 미화 50만USD 이상
- ▶ 서비스업의 경우 미화 30만USD 이상
- ▶ 투자금의 50%는 회사 등록 전에 송금, 나머지 50%는 회사 등록 후 1년 이내 송금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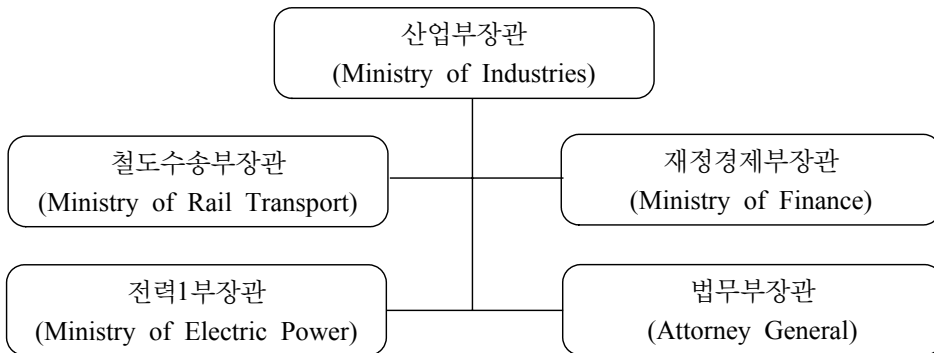
○ 인허가권 발급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진출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있음

□ MIC의 구성 및 역할

○ MIC는 미얀마 내 투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가짐

○ MIC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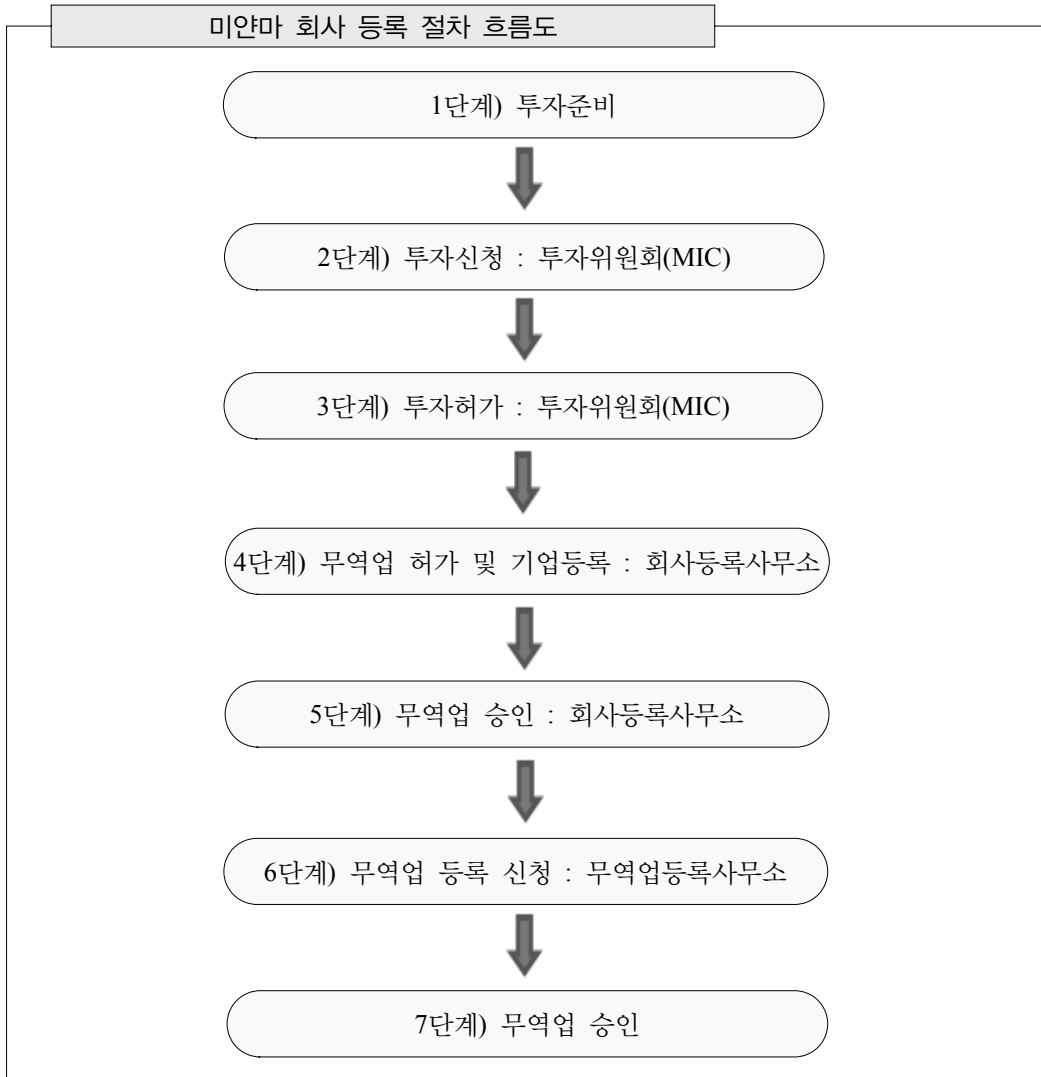
- MIC의 의장은 산업부장관이며, 철도수송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전력1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 구성됨



○ MIC 역할

- ▶ MIC는 다른 법률과 무관하게 투자자의 재정능력, 사업체의 경제적 합리성, 기술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신청에 대한 승인
- ▶ 당초 승인된 투자기간의 연장
- ▶ 투자혜택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치
- ▶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나 사실관계의 제공을 요구

□ 미얀마 회사 등록 절차 흐름도<sup>16)</sup>



16)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회사 등록 절차임

### □ 회사 등록 절차별 관련서류 및 소요시간, 경비

구분	투자 허가 신청	무역업 허가 및 회사등록	무역업자 등록
신청 기관	- 투자위원회(MIC)	- 경제기획부 산하 회사등록 사무소(Company Registration Office, CRO)	- 상업부 산하 무역등록국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Dept Office)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업체(또는 개인)재정도: (최근 1년 간 회계 감사를 필한 검토서)</li> <li>-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li> <li>- 투자신청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세부 기술서</li> <li>- 연간 예상 순이익</li> <li>- 연간 예상 외환가득액, 연간 사업 운영 자금</li> <li>- 투자비 회수 기간</li> <li>- 고용 창출 효과</li> <li>- 국민 소득 기여 정도</li> <li>- 국내의 시장 동향</li> <li>- 100% 단독투자의 경우 투자 기관 주무부서와의 예약서 초안</li> <li>- 합작 투자인 경우 현지업체와 체결한 비망록, Articles of Association, 계약서 초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m A</li> <li>-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s of Association</li> <li>-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li> <li>- questionnaire</li> <li>- 기타(미얀마에서 수행할 영업 활동, 미얀마 기업 설립후 1년간 소요될 운영 자금)</li> <li>- 여권 사본 및 은행 계좌 사본을 반드시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form</li> <li>- 회사등록증</li> <li>- Form 6</li> <li>- Form 26 여권사본</li> </ul>
소요 비용	공식 소요 비용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비: 100달러</li> <li>- 등록비: 1,500달러</li> <li>- 갱신비: 500달러(2년마다 갱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0K(1년),</li> <li>- 100,000K(2년)</li> </ul>
소요 기간	건 별로 다르며 최소 수개월 소요	건 별로 다르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약 45일

### □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 혜택

- 제조 또는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연장 가능

- 이익을 유보하여 1년 이내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기계, 기구, 건물 기타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을 가속화할 권리
- 제조된 상품이 수출된 경우, 해당 수출에서 발생한 이익의 50% 법인세 면제
- 외국인 고용자의 소득세 대납 권리
- 법인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내 발생한 손실의 3년간 이연 및 상각 가능
- 건설기간 동안의 기계,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등 면제
- 건설기간 이후 3년의 생산 기간 동안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면제

#### □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외화 송금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률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유화 금지 및 투자기간 종료 후 자본 회수 보장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법률상 외국자본, 세후 순이익, 외국인의 소득을 외화 송금 가능
- 다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현실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지는 않음

#### □ 개정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2012.11.2.공포)

- 정부 부처와의 합작사업에 대한 상세 사항 규정
-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제조업의 경우 수출로 발생한 수익의 50%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
- 1년 이내에 재투자된 수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
- 기계, 시설, 건물 등 사영용 고정자산을 가속상가할 권리
-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에 대해 상업세 면제 혜택





- 외국인이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50년 기간, 10년씩 2회 연장 가능)
- 외국회사 비숙련 근로자가 미얀마 현지인일 것. 숙련 노동력의 경우, 5년 후 25%, 그 후 5년에 25%씩 75%까지 미얀마 현지인 비중을 늘릴 것
- 근로자는 국영 노동사무소 또는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 채용할 것
- 외국인 영업의 비국유화 보장하되, 국유화 될 경우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보상함
- 공식환율에 의해 가장하도록 한 종전 방식을 시장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4 | 미얀마 경제특구법

### □ 개요

- 2011년 1월 27일 미얀마 신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 경제 발전을 목표로 “경제특구법”을 공표함
- 경제특구법은 투자자의 소득세 감면, 토지 이용 기간 연장, 외화 송금 자유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 소득세, 상업세 감면

- 첫 5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청 가능
- 10년 이후부터 5년간 이익 재투자 시, 이익에서 기준수입세율의 50% 감면 신청 가능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첫 5년간 수출액의 수입세(IncomeTax) 면제 가능. 두 번째 5년간 정해진 수입세 50% 부과
- 수출품에 대한 상업세 면제 신청 가능
- 제조업의 경우 세금 면제와 감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출제품의 총 생산 가치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50%, 중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60%, 소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70%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 경제특구내 투자자는 최소 30년간 토지 임대나 토지 사용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기업은 연속하여 30년간 연장 가능하고 추가 15년 연장 가능(중규모 투자 기업은 15년간 2회 연장 가능, 소규모 투자 기업은 5년간 2회 연장 가능)

#### □ 제한 사항

- 투자자는 숙련공, 기술자,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개시연도 부터 최초 5년간 25%, 다음해 5년간 50%, 추가 5년간 75%의 내국인을 채용해야 함
-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될 경우 하루당 미납세액의 0.5%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세금 및 관세 지불 회피, 연장된 기간 후 세금과 관세의 체납, 납부 거부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조직에 의해 규정된 세금의 5배 이내의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정부 부처와 조직에 제출된 서류 등을 고의적으로 위조한 것이 명백할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음
- 세금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관련 부처와 위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 투자형태 및 외환송금

- 상품의 생산과 사업의 운영 기간내에는 중앙조직에 의해서 결정된 통화에 따라 평가하고 지불할 수 있음
- 투자자 외화로 경제특구 내 또는 해외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음

### □ 외국인투자법(1988), 개정된 외국인투자법(2012), 경제특구법(2011) 주요내용비교

내용	외국인투자법(1988)	개정 외국인투자법(2012)	경제특구법(2011)
토지 임대	- 개인소유토지임대불가능 - 기본 30년+5년+5년 연장 가능	- 개인소유토지 임대가능 - 기본 50년+10년+10년 연장 가능	- 기본 30년+30년+15년 연장 가능 (대규모 투자 기준)
소득세 면제	- 개업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인정. 업무상 이익이 1년 이상 재투자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수출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감세(한도 50%)	-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면제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수출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감세(한도 50%) 유지 - 수출품에 대해서는 상업세 면제	- 첫 5년간 소득세 면제, 두 번째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신청 가능. 세 번째 5년간 이익 재투자 시 이익에서 기존수입세율의 50% 감면신청 가능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첫5년간 수출액의 수입세(IncomeTax) 면제 가능. 두 번째 5년간 정해진 수입세 50%만 부과 - 수출품에 대한 상업세 면제 신청 가능
투자형태 및 외환송금	- 현지 파트너 없이 단독 법인 설립 가능 -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 지분은 최소 35%	- 현지파트너 없이 단독법인 설립 가능 유지(주정부와의 합작투자내용 구체화됨) -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 지분은 최소 35%로 현행법 유지	- 상품의 생산과 사업의 운영 기간내에는 중앙조직에 의해서 결정된 통화에 따라 평가하고 지불할 수 있음 - 투자자 외화로 경제특구 내 또는 해외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음

## 5 | 미얀마 부동산 관련 법제

### □ 미얀마 부동산 관련 법제

- 미얀마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은 1987년 제정된 미얀마 부동산 양도제한법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에 따름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는 미얀마 내 부동산을 취득(매수, 증여, 담보, 교환, 양도 등 불문) 할 수 없음
- 미얀마 내국인 역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담보, 교환할 수 없으며, 매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 외국인은 미얀마 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가능함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임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최초 30년까지 임차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 경우 15년씩 2회에 걸쳐 연장 가능함<sup>17)</sup>

종 전	현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 민간 소유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 임대차기간 1년 이내</li> <li>▶ 정부소유 부동산 임차할 경우 : 장기 임차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및 정부 소유 부동산 임차할 경우 : 최초 30년 + 15년 + 15년</li> </ul>

17) 2011년 9월 30일 정부지침의 형식(The Union 14 Government Notification No. 39/2011)으로 부동산 임차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





2012 Myanmar >>>

# 제 4 장 미얀마 진출시 애로사항

## 1. 미얀마 진출 국내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1 | 미얀마 진출 국내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 미얀마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대우인터내셔널·태평양물산 담당자 면담 및 미얀마 현지 한인회 사이트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함
- ▶ 주요 애로사항들은 미얀마 진출 기업 및 현지 기업들의 당면한 문제점임

## □ 수출품에 대한 조세 부과

- 미얀마 정부는 수출시 수출대금의 7%(상업세 5%, 원천소득세 2%)를 수출세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음
- 미얀마 진출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한 입가공 형태의 봉제업으로 생산 제품을 100% 수출하는 상황에서 수출세 10%<sup>18)</sup> 부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 장려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미얀마 국세청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 관련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함. 이는 수출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국가와 판이하게 다른 미얀마의 독특한 제도임
-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승인업체는 초기 3년간 소득세 2%를 감면하여 상업세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미얀마는 짜트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을 감안, 수출세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하였음

18) 봉제업의 경우에는 8%의 상업세와 2%의 원천소득세 등 총 10%를 수출세로 부과



구 분	2011.7.10이전	2011.7.2~8.14	2011.8.15~2012.2.14*
상업세(A)	8%	5%	0%
소득세(B)	2%	2%	2%
수출세(A+B)	10%	7%	2%

\* 2011.8.15.부터 2012.2.14.까지 7개 품목(쌀, 콩류, 옥수수, 참깨, 수산물, 고무, 동물 및 동물관련제품(수출금지품목 제외)에 대해 6개월간 상업세 5%를 감세

### □ 원천징수세액 소급 적용

- 미얀마 정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정부 조달용 수입물품 계약분에 대해 거주자의 경우 계약금액의 3%, 비거주자인 경우 계약금액의 3.5%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미얀마 국세청은 개정일(2010년 4월 1일) 이전에 합의된 거래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3.5%의 원천징수를 소급적용하였음
- 정부 등과의 계약·입찰 등에 부과하는 원천징수세는 미얀마 세법에 명시는 되어 있었으나 과거 실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갑자기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였음
- 신정부 출범이후 해당 원천세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는 잠정보류 상태임

### □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공과금) 부과

-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공과금 및 시설 이용 요금 납부시 현지화가 아닌 달러로 납부해야 함
- 올해 초 시장변동환율제도 적용전에는 고율의 고정환율로 인해 달러 납부시 기업에 대한 실질 조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았음
- 기타 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요금 체계를 적용함

- ▶ 국내 전화비 : 현지인은 분당 50짜트, 외국인은 분당 0.2달러(180짜트)
- ▶ 그 외 전기사용료, 공원 입장료, 병원진료비, 골프장 그린피 등 현지인에 비해 10배 이상의 높은 요금을 지불함

## □ 외국인 무역사업자 등록증 신규 등록 및 갱신 제한

- 현재 미얀마는 외국인의 무역사업자 등록을 2003년부터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갱신요청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의 진출 무역업자들은 현지법인 명의로 무역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또는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음
- 외국인의 신규 및 갱신은 제한되나, 현지 미얀마인의 신규·갱신은 가능하여 일부 무역업자들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무역업 등록 거부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도 인도계 무역법인의 불법 외환유출 사건이 계기가 되었음
- 향후 MIC의 결정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무역사업자 등록증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 수입 상업세/관세 부과시 수입단가 임의 조정 문제

- 미얀마 관세청은 수입허가에 승인된 수입 단가를 무시하고 예전 수입 기록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을 검색하여 승인된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관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고 있는 설정임
- 일부 업체들이 수입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수입하는 경우(Under Value)가 있어 미얀마 관세청은 신고 수입가액 외에 별도 시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가 산정 및 분류에 있어 정당하지 않은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미얀마 진출기업의 상당수가 봉제업체로서 원단 수입시 수입 단가를 임의 조정할 경우 상업세 및 관세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 차명투자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규제

-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달러화 송금이 원활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허가 제한, 차별적 조세 제도 등 자국민 우대정책 실시로 미얀마투자위원회 등 정식 외국인투자보다는 현지인 명의 차명투자방식 선호
-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차명투자 방식을 통해 진출(의류봉제업체의 약70% 이상이 현지인 명의로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 공장으로 추정됨)
- 미얀마투자위원회는 2012년 2월 25일 미얀마 현지인의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자를 외국인투자법상 정식 외국인투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명령(Order 1. 2012)을 공포
- 미얀마 현지 사업가 및 한인회에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차명투자자 전환 행정명령을 최대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전환 여부 및 사후 미전환시 제재 조치 등에 대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하였음
- 차명투자자 전환 제도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1. 차명투자자로서 100% 외국인투자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 ▶ 실제 외국인이 사업의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현금의 100%를 투자하였지만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의 외국인 사업가
- ▶ 현지인의 지분이나 투자가 없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 ▶ 허위 혼인한 미얀마인 배우자의 명이나 허위 입양한 미얀마인 양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

## 2. 차명투자 전환 절차

▶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 신청 ⇒ 세금 체납 여부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적법성 여부 등을 심사 ⇒ 전환 여부 승인 ⇒ 승인시 명목상 운영자에게 외화를 지불하고 전환

3. 현지인의 지분이 사실상 있는 경우 합작회사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 및 승인과정은 유사함
4. 미얀마투자위원회는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함

## □ 개정 법률에 대한 공식적인 공고 절차 부재

- 미얀마 국세청, 재정세입부에서 새로운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 지침을 개정할 경우, 사전 통지 절차나 사후 공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과거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보다는 행정 지침(Order) 및 훈령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새로이 변경된 행정 지침이나 제도가 공개적으로 공포되지 않아 법률 이용자의 해당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 사회 인프라 부족

- 미얀마는 오랜 군부 통치 및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인프라가 많이 낙후 되어 있음
- 특히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인해 정전되는 사례가 잦아 현지 진출 법인의 경우 자가발전기를 보유하여야 함
- 도로,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물류비용이 높으며, 안정된 부품 조달에 애로점이 있음

## □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 ○ 미얀마는 2012.4.01.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전격 도입

#### ▶ 기존의 다중 환율 구조

- 1) 공식환율 : 1977년 IMF 특별인출권(SDR)에 따라 1달러=6.4짜트
- 2) 정부공인환율 : 수입품가격 산정과 수입관세 및 상업세 산정에 사용, 1달러=450짜트
- 3) 시장환율 : 1달러=820짜트
- 4) 외화태환권(FEC, Foreign Exchange Certification) 환율

### ○ 도입의미

- ▶ 외국인투자법 상의 공식환율 적용규정 삭제, 회사법상 최저자본금 규정 개정, 수입세 및 상업세 평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동반
- ▶ 미얀마 투자환경이 급속히 개선됨을 의미

### ○ 기존 실태

- ▶ 그동안 투자나 수출입에 적용되던 공식환율과 공인환율이 실제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되었음
- ▶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정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천연가스나 보석 등을 판매한 대금을 국고에 입금할 때 공식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짜트화로 입금했기 때문에 사실상 120배가 넘는 금액을 착복하는 것이 가능했음
- \* 공식환율(6.4짜트)과 시장환율(820짜트)간의 차이(약125배 이상)에 따른 것

### ○ 제도도입 영향

- ▶ 향후 미얀마의 환율은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됨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여지를 두기 위해 하루에 2번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율이 결정
- ▶ 외국인투자법 등에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기준으로 반영될 예정
- ▶ 미얀마 진출 우리기업들도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수익증가와 추가적인 투자가 기대됨



2012 Myanmar >>>

## [ 부 록 ]

1. 미얀마 세무서 현황
2. 미얀마 품목별 상업세율표(1991)



**1** | **미얀마 세무서 현황**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KACHIN STATE		
Kachin	S.R.O	074-22449
Myitkyinar	Dis.R.O	074-20900
Banmaw	Dis.R.O	074-50800
Myitkyinar	T.R.O	074-22552
Moekaung	T.R.O	074-40321
Moenyin	T.R.O	074-60029
Pharkhan	T.R.O	074-70623
Winemaw	D.S.O	074-80058
Banmaw	T.R.O	074-50532
Shweku	D.S.O	074-52026
Moemauk	D.S.O	PTO
Putar O	D.S.O	PTO
KAYAR STATE		
Kayar	S.R.O	083-21093
Loikaw	T.R.O	083-21516
Deemawso	D.SO	
Bawlakae	D.S.O	-
PhaeKhone	T.R.O	-
PharSoung	D.S.O	-
KAYIN STATE		
Kayin	S.R.O	058-21085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Myawade	Dis.R.O	058-50225
Pha An	T.R.O	058-21147
Myawaddy	T.R.O	058-50018
Kawtkayake	T.R.O	058-40026
Hlaing Bowe	D.S.O	058-46233
Kyar Aii Seik Gyi	D.S.O	01-3331092
Pharpon	D.S.O	01-581249
CHINE STATE		
Chin	S.R.O	070-21061
Phalan Distict	Dis.R.O	070-40143
Har Khar	T.R.O	070-21071
Phalan	D.S.O	070-40027
Tee Tain	T.R.O	070-50016
Mintut	D.S.O	070-70049
MON STATE		
Mon	D.D	057-23018
MawLaMyaing Distric	A.D	057-23017
MawLaMyaing	T.R.O	057-21130
Kyeikhto	T.R.O	057-60058
Thahton	T.R.O	057-40106
Thanphyuzayet	T.R.O	057-79036
Mudon	T.R.O	057-70036
Yee	T.R.O	057-50036
Chaung Sone	T.R.O	Ex:34
Poung	D.S.O	Ex:51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Beelin	D.S.O	057-64166
Kyeik Ma Yaw	D.S.O	Ex:32
RAKHINE STATE		
Rakhine	S.R.O	043-23376
Sittwe Distric	A.D	043-24237
Maunng Taw	A.D	043-55066
Sittwe	T.R.O	043-21058
Maunng	T.R.O	043-55022
Bu Thee Taung	T.R.O	-
Kyauk Phyu	T.R.O	043-46079
Than Twe	T.R.O	043-56342
Taung Gote	T.R.O	043-60049
Kyauk Taw	D.S.O	-
Myauk Oo	D.S.O	043-24200
Minn Pyarr	D.S.O	043-21694
Myay Pon	D.S.O	-
Yann Bye	T.R.O	Ex.043-63766
Mann Aung	D.S.O	-
Armm	D.S.O	065-21480-85
Gwa	T.R.O	-
MaungTaw	D.S.O	-
PonNarKyung	D.S.O	-
YaTaeTaung	D.S.O	-
SHAN NORTH STATE		
Shan	S.R.O	082-22982
		082-23049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Lashio Distric	Dis.R.O	082-25626
Muse Distric	Dis.R.O	082-50872
Lashio	T.R.O	082-23077
Muse	T.R.O	082-50478
Kyaukme	T.R.O	082-40059
Nan Khmm	T.R.O	082-61512
Thi Paw	T.R.O	082-80027
Cook Khine	T.R.O	082-62012
Naung Cho	T.R.O	082-85019
Moe Mate	T.R.O	086-45096
Nann Ma Tu	T.R.O	082-87003
Nannsan	T.R.O	01-3333200
Kun Long	T.R.O	Ex.01-3331096
		Ex.01-3331097
Tant Yan	T.R.O	Ex.01-3332382
Theinni	T.R.O	082-63030
KyuKoakPanSai	D.S.O	-
SHAN SOUTH STATE		
Shan (SOUTH) state	S.R.O	081-21718
Taung Gyi Distric	Dis.R.O	081-25379
Tar Chi Late Distric	Dis.R.O	084-51950
Kyaing Tone Distric	Dis.R.O	084-22944(fax)
Taung Gyi	T.R.O	081-21195
Tarchilake	T.R.O	084-51482
Kyaing Tone	T.R.O	084-21065
Kalaw	T.R.O	081-50059
Nyaung Shwe	T.R.O	081-29024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Pintaya	T.R.O	-
Pinloun	D.S.O	-
Hopone	T.R.O	081-46002
Yetsouth	D.S.O	081-40078
Nansan	D.S.O	081-80166
Konhein	D.S.O	081-84232
Loi Lin	T.R.O	081-30049
Laechar	D.S.O	081-32011
Linnkhay	D.S.O	-
Moenae	D.S.O	-
Mineshuu	D.S.O	-
Mineset	D.S.O	084-60165
Minephyt	D.S.O	-
AYEYARWADY DIVISION		
Ayeyarwady	D.R.O	042-24529
Pathein Distric	A.D	042-24290
Hin Tha Ta Distric	A.D	044-21087
Pathein	T.R.O	042-25290
Kangyidaung	T.R.O	042-24976
Tharpoung	D.S.O	042-24981
Ngaputaw	D.S.O	042-44216
Kyone Pyaw	T.R.O	046-56435
Yae Kyi	T.R.O	042-52383
Kyaung Gone	D.S.O	042-40291
Hinthada	T.R.O	044-21087
Zalon	D.S.O	044-35015
Lay Myat Nar	D.S.O	044-70014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Myan Aung	T.R.O	044-50133
Kyan Khin	D.S.O	044-40238
Ingapu	D.S.O	044-30133
Myang Mya	T.R.O	042-70184
Ainmee	D.S.O	Ex:042-85126
LattPuttar	T.R.O	042-80083
War Khe Ma	T.R.O	042-60120
Mawlamyinkyune	T.R.O	042-50076
MaOuPin	T.R.O	045-30164
Pantanaw	T.R.O	046-30374
Nyaungtone	T.R.O	046-20047
Danuphyu	T.R.O	046-25398
Pyarpone	T.R.O	045-40054
Bogalay	T.R.O	045-45577
Kyatlatt	D.S.O	045-48479
Daydaye	D.S.O	045-56058
BAGO DIVISION		
Bago	Div.Ro	052-21862
Bago Distict	Ds.R.O	052-21018
Taungoo Distict	Dis.R.O	054-25856
Pyay Distict	Dis.R.O	053-25913
Taungoo	T.R.O	054-23045
Kyaukdanga	T.R.O	054-60031
Nyunglaypin	T.R.O	052-50046
Shwekyin	D.S.O	052-42043
DeikOo	T.R.O	052-40017
Waw	D.S.O	052-75610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Kawa	T.R.O	-
Tanatpin	T.R.O	052-46374
Bago	T.R.O	052-21064
Minhla	T.R.O	053-30012
Paungtae	T.R.O	053-38194
Theeegone	D.S.O	Ex.93
Pyay	T.R.O	053-21189
Okkpho	D.S.O	Ex.1
Kyopinkauk	T.R.O	053-50039
Nattalin	T.R.O	053-36022
Shwetaung	T.R.O	053-55029
Htantabin	D.S.O	Ex.20
Okktwin	D.S.O	Ex.132
Yaytarshey	D.S.O	054-80026
Phyuu	T.R.O	054-40035
Paukkhon	D.S.O	Ex.244
Padaung	D.S.O	053-40036
Tharyarwati	T.R.O	053-30010
Zeekone	D.S.O	053-34036
Latpadan	T.R.O	053-32021
Moenyo	D.S.O	-
MAGWE DIVISION		
Magwe	Div.R.O	063-23212
Magwe Distric	Dis.R.O	-
PaKokKu District	Dis.R.O	92302044
Magwe	T.R.O	063-21084
Pakokku	T.R.O	062-21082(Fax)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Yae Sa Kyo	T.R.O	062-30243
Chauk	T.R.O	061-21057
Yae Nan Chaung	T.R.O	060-21052
Min Bu	T.R.O	065-21010
Taung Twin Gyi	T.R.O	063-50016
Aung Lan	T.R.O	069-21050
Tha Yat	D.S.O	068-21067
Gangaw	D.S.O	062-50045
Poungk	D.S.O	062-45281
Seik Phyu	D.S.O	061-30362
Net Maung	D.S.O	063-69090
Sa Lin	D.S.O	063-42284
Min Hla	D.S.O	065-45484
Sin Paung Wae	D.S.O	-
Myine	D.S.O	062-40023
Pwint Phyu	D.S.O	-
MANDALAY DIVISION		
Mandalay	D.R.O	02-61153
Mandalay Distric	Dis.R.O	02-30192
Naypyitaw Distric	Dis.R.O	067-22198
Mate Hti Lar Distric	Dis.R.O	064-24679
Mandalay	A.D	02-35916
Aung Myay Thar San	T.R.O	02-61157
Chan Aye Thar San	T.R.O	02-60204
Mahar Aung Myay	T.R.O	02-64564
Chan Mya Thar Si	T.R.O	-
Pyi Gyi Tagon	T.R.O	02-80553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Myin Chan	T.R.O	066-21097
Mate Hti Lar	T.R.O	064-32126
Pyin Ma Nar	T.R.O	067-22198
Moe Gote	T.R.O	086-20031
Kyauk Sae	T.R.O	066-50248
Won Twin	T.R.O	064-50032
Kyauk Padaung	T.R.O	061-50570
Nyung Oo	T.R.O	061-60288
Tat Kone	T.R.O	067-70135
Pyin Oo Lwin	T.R.O	085-22096
Pyaw Bwe	T.R.O	064-49082
Ma Hlaing	T.R.O	064-60069
Lae Wae	T.R.O	067-30355
A Ma Ra Pu Ra	T.R.O	02-70427
Myint Thar	D.S.O	066-60040
Taung Thar	T.R.O	066-70026
Ma Da Yar	T.R.O	02-79007
Da Dar Oo	D.S.O	066-44040
Na Hto Gyi	T.R.O	066-80080
Ya Mae Thin	T.R.O	064-40015
Thar Si	T.R.O	064-69039
Pathein Gyi	T.R.O	02-88812
Tha Baik Kyin	D.S.O	086-30016
Sink Kai	D.S.O	066-40345
Sink Kuu	T.R.O	086-35180
Ngan Zonn	D.S.O	C/O 69064
SAGAING DIVISION		
Sagaing Division	Div.R.O	071-23275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Monywa Distict	Dis.R.O	071-23325
Shwe Bo Distict	Dis.R.O	075-51051
KaLay	T.R.O	073-21042
Ka Lay Wa	D.SO	23
Ka Thar	T.R.O	075-25045
Ka Ni	D.S.O	Ex:30
Kant Ba Lu	T.R.O	075-27040
Kaw Lin	T.R.O	075-42109
KhinOo	T.R.O	Ex:68
Khan Tiee	D.S.O	Ex:28
Chaung Oo	D.S.O	071-45104
Sagaing	T.R.O	072-21619
SarLinKyi	D.S.O	-
TaMu	T.R.O	073-40105
Tant Sie	D.S.O	075-49379
Thee Kyeik	D.S.O	075-60475
PinLweBu	D.S.O	Ex:121
Pale	D.S.O	-
PhungPyin	D.S.O	Ex:11
BuTaLin	D.S.O	071-50275
MinKing	D.S.O	-
MawLike	D.S.O	Ex:39
Myaung	D.S.O	-
MyineMu	D.S.O	071-40398
MonYwa	T.R.O	071-21101
Yin Mar Pin	D.S.O	-
YayOo	D.S.O	075-40146
Shwe Bo	T.R.O	075-21051
Won Tho	D.S.O	075-50085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Wet Lett	D.S.O	075-30108
Hon Ma Lin	D.S.O	Ex:89
A Yar Taw	D.S.O	-
Inn Taw	D.S.O	075-29019
THANINTHAYE DIVISION		
Thaninthaye	Div.R.O	059-41655
Myeik	Dis.R.O	059-41992
Da We	Dis.R.O	059-21709
		059-21093(Fax)
Kaw Thaug	Dis.R.O	059-51063(Fax)
Myeik	T.R.O	059-41048
Dawe	T.R.O	059-21093
Kaw Thaug	T.R.O	059-51063
LaungLon	T.R.O	21375 (Ex.14)
Kyong Su	T.R.O	059-62025
Palaw	T.R.O	059-30100
Boad Pyin	T.R.O	-
Tha Yet Chaung	D.S.O	059-22494
Yae Phu	D.S.O	059-22407
Thanintharye	D.S.O	-
YANGON DIVISION		
Yangon	Div.R.O	01-253800
Nouthern Distric	Dis.R.O	01-371279
Western Distric	Dis.R.O	01-252428
Southern Distric	Dis.R.O	01-384429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Eastern Distric	Dis.R.O	01-252543
Insein	T.R.O	01-640263
Lanmadaw	T.R.O	01-371216
South Okkalarpa	T.R.O	01-560488
Dagon	T.R.O	01-379317
Tharkata	T.R.O	01-201927
Kyauktan	T.R.O	056-25064
Thonegya	T.R.O	09-5320178
Khayan	T.R.O	056-30022
Hlaingtharyar	T.R.O	01-645035
Papaetan	T.R.O	01-370879
Tarmway	T.R.O	01-554164
Alone	T.R.O	01-221746
Sankyaung	T.R.O	01-500615
Thanlyin	T.R.O	056-21036
Hlegu	T.R.O	01-629026
Dawpon	T.R.O	01-201257
Lathar	T.R.O	01-252346
Thingangune	T.R.O	01-560807
Yankyin	T.R.O	01-556752
Mingalartaungnyut	T.R.O	01-201042
Mingalardon	T.R.O	01-635244
Seikan(Saekyikanaungto)	T.R.O	01-388316
Dala	T.R.O	01-201931
Kamaryut	T.R.O	01-536440
Hlaing	T.R.O	01-682237
Mayangonn	T.R.O	01-681862
Kyimyindai	T.R.O	01-535216
Taikkyi	T.R.O	01-055-20115

주·지방청/세무서 명	유형	연락처
Hmawby	T.R.O	01-620053
Htantapin	T.R.O	01-619212
Shwepyithar	T.R.O	01-611067
Puzontaung	T.R.O	01-290472
Botahtaung	T.R.O	01-256997
Bahan	T.R.O	01-380910
North Okkalapa	T.R.O	01-699406
Tontay	T.R.O	045-50011
Kungyangon(Kawhmu)	T.R.O	0-1265316
DagonMyothit(North)	T.R.O	01-580626
DagonMyothit(South)	T.R.O	01-595018

**2** | 미안마 품목별 상업세율표(1991)

APPENDED SCHEDULES OF THE COMMERCIAL TAX LAW 상업세법의 세율표

SCHEDULE - I. GOODS NOT CHARGEABLE TO TAX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화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	Paddy. 벼.
2.	Wheat, unmilled. 밀
3.	Maize and other cereals, unmilled. 옥수수 및 기타 곡물
4.	Pulses, unmilled. 콩
5.	Groundnuts, shelled and unshelled. 땅콩.
6.	Sessamum.
7.	Mustard seeds, sunflower seeds, tamarind seeds, cotton seeds 겨자씨, 해바라기 씨, tamarind 씨, 면화의 씨
8.	Oil Palm. 오일 팜
9.	Cotton, raw.
10.	Jute and like fibres. 황마와 같은 섬유.
11.	Garlic, onions. 마늘, 양파
12.	Potatoes. 감자
13.	Spices, raw (plants, parts of plants, nuts, seeds, etc) 향료, 원료 (식물, 식물의 부분, 견과류, 씨앗 등).
14.	Spices prepared. 향신료
15.	Fruits, fresh. 신선한 과일
16.	Vegetables, fresh. 신선한 야채
17.	Sugarcane. 사탕수수
18.	Mulberry leaves. 뽕나무 잎
19.	Plant of Herb. 허브 잎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20.	Animal reed, fresh and dried (farm products only).
21.	Thatch, reeds such agricultur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22.	Wood, bamboos. 나무, 대나무
23.	Live animals
24.	Silk cocoons. 실크 누에.
25.	Cane, finished and unfinished
26.	Honey and bee wax. 허니와 꿀벌 왁스
27.	Lac.
28.	Coal and coke. 석탄 및 코크스
29.	Bran and pollard of pulses.
30.	Cake, meal and residue of groundnuts, sessamum, cotton seeds, rice bran etc.
31.	Soapstocks (of oil residue).
32.	Bleaching substances (of oil residue). 표백 물질(기름 성분의)
33.	Molasses. 당밀
34.	Cotton ginned
35.	Coir yarn. 야자 껍질의 섬유 원사
36.	Virginia tobacco, cured.
37.	Feathers. 깃털.
38.	Umbrella cloth. 우산 천
39.	Bandages, gauze, other surgical dressing materials, hospital and surgical outfit and sundries.
40.	X-ray film, plates and other X-ray, surgical and medicinal pharmaceutical apparatus and equipment.
41.	Insecticides, pesticides, fungicides etc. 살충제, 살충제, fungicides 등
42.	Various kind of gun powder, various kinds of dynamites and accessories thereof used by the civil departments. 민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화약, 다양한 종류의 다이내마이트와 액세서리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43.	Stamps all sorts. 모든 종류의 우표
44.	Defence and Military Stores and equipments.
45.	Sealing wax and sticks.
46.	Natural gas. 천연 가스
47.	Petroleum, crude. 석유, 원유
48.	Text books, exercise and drawing books of various kinds and papers for the production of such books and all sorts of pencils 텍스트 책, 다양한 종류의 연습장과 그리기 책, 그러한 책들의 생산에 필요한 종이와 모든 종류의 연필
49.	Slate, slate pencils and chalk.
50.	Shrimp paste (ngapi).
51.	Shrimp and fish sauces (Ngan-pya-ye). 새우와 생선 소스
52.	Groundnut oil, seshamum oil, sunflower seed oil, rice bran edible oil, other edible oil and oil cakes. 땅콩 기름, seshamum 오일, 해바라기 씨 기름, 쌀겨 식용 기름, 기타 식용 오일과 껌묵.
53.	Wheat flour (coarse and fine). 밀가루 (굵고 좋은)
54.	Pulses, split and powdered
55.	Rice, broken rice and rice bran.
56.	Electricity for industrial use.
57.	Fresh fish, fresh prawn
58.	Sterilized and other pasteurised milk.
59.	Milk powder. 분유
60.	Milk for the use of infants and invalids.
61.	Chili 칠리
62.	Saffron. 사프란
63.	Ginger. 생강
64.	Fish paste 어묵류
65.	Ripe tamarind. 익은 타마린드

**SCHEDULE 2. GOODS CHARGEABLE TO TAX AT 5 PER CENT 5%**  
**세금이 청구되는 재화**

(1) If the goods are those imported from abroad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Landed Cost.

(2) If the goods are those produced within the State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Sale Receipt.

(1) 물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양륙비용에 부과된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은 판매수익에 부과된다.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	Jams, all sorts. 모든 종류의 잼
2.	Soya bean paste, soya bean sauce and the like. 콩 된장, 콩 소스, 비슷한 종류
3.	Tea, preserved and dried, excluding black tea. 보존 및 건조된 차, 홍차 제외
4.	Cotton seed oil, Rice bran oil, inedible. 면화 씨 기름, 쌀겨 기름, inedible
5.	Household medicines and other pharmaceuticals. 가정용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
6.	Charcoal. 숯
7.	Fountainpens and ball point pens. 만년필, 볼펜
8.	Cotton longyi (Coarse).
9.	Shirting, cotton, grey, unbleached. 셔츠감, 면화, 회색, 표백하지 않은
10.	Drills cotton.
11.	Vests.
12.	Cotton yarn. 코튼 원사
13.	Cotton thread 무명실
14.	Chipping stone 돌조각
15.	Limestone. 석회암
16.	Road building stone and sand. 도로 건축 석재, 모래
17.	Electrical equipment for educational and instructional purposes. 교육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전기장비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8.	Carpenter's tools and accessories. 목수의 도구 및 액세서리
19.	Agricultural tools and accessories. 농업 도구 및 액세서리
20.	Rope of coir, jute, cotton and other kinds of rope. 야자 껍질의 섬유, 황마, 면화 로프와 다른 종류의 로프
21.	Household and laundry soap.
22.	Hats, all sorts. 모든 종류의 모자
23.	Sporting Materials.
24.	Wheel barrows. 손수레
25.	Made-up Track Suits for sports. 기성 운동복
26.	Methylated Spirit. Methylated 메틸레이트 알콜
27.	Urea fertilizers. 요소 비료
28.	Salt. 소금
29.	Cooking Power. 전기 조리기구
30.	Vinegar 식초
31.	Noodles (wet or dired) and wheat flour vermicelli. 국수 (습식,건식) 및 밀가루 버미첼리 국수

### SCHEDULE 3. GOODS CHARGEABLE TO TAX AT 10 PERCENT

#### 10% 세율로 청구되는 재화

(1) If the goods are those imported from abroad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Landed Cost.

(2) If the goods are those produced within the State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Sale Receipt.

(1) 물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양륙비용에 부과된다.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은 판매수익에 부과된다.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	Ice.
2.	Milk, Condensed.
3.	Malt and malt flour 맥아 및 맥아 가루
4.	Cheroot.
5.	Bread, biscuits and cakes. 빵, 비스킷과 케이크
6.	Other food stuff of wheat, not elsewhere specified. 다른 밀로 만든 음식
7.	Food colours.
8.	Food flavours and essences. 식품 풍미와 에센스
9.	Turpentine refined.
10.	Tung oil and turpentine raw. 통 오일과 식물성 기름의 원료
11.	Greases, oils, lubricants and other petroleum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Greases, oils, 윤활유, 석유 제품
12.	Baking powder and yeast. 베이킹 파우더와 효모
13.	Dyes and Dyestuff. 염료 및 염료
14.	Chemical elements compounds. 화학 원소 화합물
15.	Petroleum coke. 석유 코크스
16.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of petroleum and petroleum coke 석유 및 석유 코크스의 화학 및 화학 제품
17.	Parts and accessories for shoes, boots and slippers. 신발, 부츠, 슬리퍼 부품 및 액세서리
18.	Chrome leather, leather sole, leather of sheep and goat 크롬 가죽, 가죽 단독, 양, 염소의 가죽
19.	Aluminium circles and plates.
20.	Raw materials ad accessories of rubber.
21.	Plastics raw materials. 플라스틱 원료
22.	Teak log. 티크 통나무
23.	Hardwood log. 견목 통나무
24.	Poles and posts of teak and hardwood. 티크, 견목의 기둥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25.	Newspaper, Journal. Magazine and other printed books and publications. 신문, 저널, 잡지 및 기타 인쇄 서적 및 출판물
26.	Papers and paperboards.
27.	Cigarette papers.
28.	Ink, all sorts. 각종 잉크
29.	Pins, Clips, Paper fasteners and other office stationery supplies. 핀, 클립, 종이 서류철 및 기타 사무 문구 용품
30.	Silk yarn. 실크 원사
31.	Ribbons, tapes, trimmings of cotton.
32.	Workmen outfits. 작업복
33.	Gypsum. 석고
34.	Baryte
35.	Graphite 석묵
36.	White clay, fire clay and clay power.
37.	Soapstone. 동석
38.	Dolomite stone. 백운석의 돌
39.	Red, yellow and White Ochres. 빨강, 노랑, 흰색 오cker
40.	Bentonite. 백토
41.	Tarazo stone.
42.	Washed clay. 씻은 점토
43.	Lead slag. 납 용제
44.	Marble. 대리석
45.	Tin concertrates, tungsten concertrates, Tin/Tungsten/Scheelite and mixed ores.
46.	Fefined lead.
47.	Zinc concentrates. 아연
48.	Copper Matte.
49.	Nickle speiss.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50.	Antimonial lead.
51.	Antimony ores.
52.	Lead sulphide. 황화 리드
53.	Saws all sorts. 모든 종류의 톱
54.	Bottles, all sorts. 각종 병
55.	Gunny cloth and gunny bags. 삼베 헝겊과 삼베 가방
56.	Packing materials of paper and paperboard. 종이와 판지의 포장재료
57.	All sorts of plastic bag. 모든 종류의 비닐 봉투
58.	Containers, buckets of iron and steel and metal plated utensils.
59.	Crown cork.
60.	Glass tumblers.
61.	Spectacle, frames and parts for spectacles.
62.	Fishing Hooks. 낚시 갈고리
63.	Electricity excluding industrial use.
64.	Unexposed photographic films.
65.	Artist's wares. 아티스트의 상품
66.	Coffee powder, all sorts. 모든 종류의 커피 가루
67.	Tea, black. 차, 블랙
68.	Candles. 양초
69.	Raw Rubber. 원료 고무
70.	Bicycles, tyres and tubes.
71.	Tyres and tubes and flaps for motor-car, and motor-cycles Tyres 자동차와 오토바이용 타이어, 튜브, 덮개
72.	Rubber compounds. 고무 화합물
73.	Tyres and tubes not elsewhere specified. 특정되지 않은 타이어와 튜브
74.	Lacquerware. 칠기
75.	Cotton longyi (fine).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76.	Cotton fabrics, coloured, dyed ad cotton sheeting white bleached or marcerised. 코튼 패브릭 컬러, 염색, 흰색 표백 또는 marcerised된 면 시트
77.	Cotton blankets. 코튼 담요
78.	Cotton towels. 코튼 타올
79.	Printed cotton fabrics 인쇄 면화 원단
80.	Household linen. 가정용 리넨
81.	Cotton mosquito nettings. 면화 모기장
82.	Cotton fabrics, not elsewhere specified, other than cotton lace fabrics. 면화 레이스 원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정되지 않은 코튼 패브릭
83.	Made-up apparel, other than for sports.
84.	Made-up mosquito nets. 기성품 모기장
85.	Lime and lime powder. 라임과 라임 가루
86.	Household utensils of brass and other metals. 황동 및 기타 금속의 가정용기구
87.	Galvanised corrugated iron sheets. Galvanised 골판지 철 시트
88.	Agricultural machines equipment and machines tools. 농업 기계장비 및 기계공구
89.	Weaving, knitting, spinning machine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	Lamp shades, switches, block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1.	Electrical wires, clips and other internal electrical fittings. 전기 전선, 클립 및 기타 내부 전기 부품
92.	Industrial sewing machines. 산업용 재봉 기계
93.	Road constuction machines, road roller, parts and aecessories thereof. 도로 건설용기계, 도로 롤러, 부품과 액세서리
94.	Battery (accumulators).
95.	Fire extinguishers. 소화기
96.	Sanitary fixtures and fittings. 위생 설비 및 피팅
97.	Plastic building materials. 플라스틱 건축 자재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98.	Ball bearings. 볼 베어링
99.	Bicycles. 자전거
100.	Bicycles spare parts and accessories. 자전거 부품 및 액세서리
101.	Tractors, other industrial motor truck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102.	Train locomotives, coaches, spare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철도 기관차, 코치,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
103.	Sea going ships, other ships, motor boats schooner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선박, 모터 보트의 schooners, 부품 및 액세서리
104.	Air-craft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105.	Fishing nets. 어망
106.	Plastic cloth. 플라스틱 형겜
107.	Plastic materials for house hold and personal use, not elsewhere specified. 특정한 다른 용도가 아닌 가정용과 개인용 플라스틱 재료
108.	Kerosene stoves, spares and accessories. 석유 스토브, 여분과 액세서리
109.	Raincoats. 레인코트
110.	Umbrella, all sorts. 각종 우산
111.	Canvas footwear, cane ball shoes and footwear all sorts.
112.	Malted Milk Preparation.
113.	Cold milk, ice cream etc. 차가운 우유, 아이스크림 등
114.	Parts and accessories for domestic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국내 전기 장비 및 기구 부품 및 액세서리
115.	Sweet. 사탕류
116.	Beverages. 음료
117.	Toilet Soaps. 화장실 비누
118.	Domestic sewing machines. 국내 재봉 기계
119.	Sugar. 설탕.
120.	Aerated water. 탄산가스가 든 물

**SCHEDULE 4. GOODS CHARGEABLE TO TAX 20 PERCENT**  
**20% 세율로 청구되는 재화**

- (1) If the goods are those imported from abroad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Landed Cost.
- (2) If the goods are those produced within the State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Sale Receipt.

- (1) 물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양륙비용에 부과된다.
-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은 판매수익에 부과된다.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	Artificial and synthetic stones and diamonds including cut stanes, and artificial pearls.
2.	Household glassware, other than glass vases, bottles and tumblers. 유리 꽃병, 병 및 텀블러 이외의 가정용 유리 제품
3.	Marble products. 대리석 제품
4.	Macaroni. 마카로니
5.	Saccharine. 설탕
6.	Chillies sauce and sauces, all sorts.
7.	Milk cream, butter, ghee, cheese. 밀크 크림, 버터, 버터 기름, 치즈
8.	Cigars, pipes, all sorts. 시가, 파이프
9.	Naphthalene balls and comphor blocks.
10.	Paints, pigments and other colouring and polishing materials. 페인트, 안료 및 기타 착색제와 연마 재료
11.	Painters' materials (excluding artists' wares)
12.	Zip and buttons all sorts not elsewhere specified. 다른 곳에서 특정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지퍼 및 버튼
13.	Match flints.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4.	Hair pins, hair slides, hair clips, hair grips, hair curlers and hair dressing articles. 헤어 핀, 헤어 슬라이드, 헤어 클립, 헤어 그립, 헤어 컬핀과 헤어 드레싱 재료
15.	Tooth brushes.
16.	Detergents and cleansing power. 세제와 클렌징 파워
17.	Rubber material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고무 소재
18.	Hardwood milled, plywood and veneers of hardwood. 가공된 나무, 합판과 베니어
19.	Paper board bilding and constructional goods.
20.	Paper products, other than packing material. 포장재료 이외의 종이 제품
21.	Canvas cloth. 캔버스 천
22.	Linoleum and floor coverings.
23.	Tarpaulins in rolls and pieces.
24.	Cement. 시멘트
25.	Brick, brick tiles and products, fire brick. 벽돌, 벽돌 타일 제품, 내화 벽돌.
26.	Crockery (porcelain). 그릇 (도자기)
27.	Crockery (enamel plated). 그릇 (에나멜 도금)
28.	Lamps, lantern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램프, 등불, 부품 및 액세서리
29.	Household porcelain fittings and fixtures. 가정용 도자기 설비와 비품
30.	Wire nails and nails.
31.	Razors, razors blades and scissors. 면도기, 면도기 블레이드와 가위
32.	Locks, padlocks and keys.
33.	Fitting and accessories for furniture, boxes trunks.
34.	Iron and steel heavy plates, iron and steel plates, coated.
35.	Iron and steel bolts nuts, rivets etc.
36.	Iron and steel rods, bars, billets, wire ad such constructional goods.
37.	Building and constructional goods of non-ferrous metals.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38.	Plumbing fixtures and fittings. 배관 설비 및 피팅
39.	Mixers, mixers' wares, stone and gravel crusher and such constructional and miscellaneous industrial wares. 믹서, 믹서 '도자기, 돌 및 자갈 분쇄기와 같은 건설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40.	Iron and Steel anchors and chains. 철, 강철의 앵커 및 체인
41.	Miscellaneous metallic goods, other than of silver and platinum, not elsewhere specified.
42.	Electric motors. 전기 모터
43.	Torch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손전등 부품 및 액세서리
44.	Electric bulbs and tubes all sort, other than neon bulbs and tubes for advertising.
45.	Electrical insulators and porcelains and ceramic telegraphic materials.
46.	Meter and meter boxes. 측정기 및 계량기 박스
47.	Electric relaying and insulating materials. 전기 릴레이 및 절연 재료
48.	Main electric transmitting equipment and accessories. 주요 전기 전송 장비와 액세서리
49.	Mining, drilling, excavat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마이닝 드릴링, 발굴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
50.	electric generators, transformers and such electric generat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전기 발전기, transformers와 같은 전기 발전 기기, 부품 및 액세서리
51.	Electric distributing equip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52.	Telecommunications, wireless, radio communicating equipment, etc.,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53.	Parts and accessories of radio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equipment.
54.	Gantry, surveying and measuring equipment, and accessories.
55.	Glass sheets and glass building and constructional goods. 유리 시트와 유리 건축 및 건설 제품
56.	Concrete and asbestos building and constructional goods.
57.	Household fittings and fixtures, other than that of porcelain.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58.	Concrete pipes. 콘크리트 파이프.
59.	Boilers, engines, generator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보일러, 엔진, 발전기, 부품 및 액세서리
60.	Pontoon, pontoon bridg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철주, 철주의 교량, 부품 및 액세서리
61.	Cigarette cases and ashtrays, all sorts. 담배 케이스와 재떨이, 모든 종류의
62.	Cinematographic films, unexposed.
63.	Toys, all sorts. 완구, 각종.
64.	Vehicles and carriages for childre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차량과 카시트, 부품 및 액세서리
65.	Silver.
66.	Printing press requisities and accessories not elsewhere specified.
67.	Mechanical lighters, all sorts.
68.	Lorries, trucks and trailers above 1/4 ton. Lorries 트럭과 1/4t 이상의 트레일러, 로리
69.	Vans and buses. 승합차와 버스
70.	Bowsers.
71.	Cranes and winches cars.
72.	Moter-car parts and accessoris, including frames and parts of chassis.
73.	Motorcycle parts and accessories. 오토바이 부품 및 액세서리
74.	Dry cells, all sorts.
75.	Mother of pearl and shells.
76.	Asbestos sheets, including roofing. 루핑을 포함한 석면 시트
77.	Stone and brick tiles other than, tarazo tiles.
78.	Carpets, carpetings, of jute.
79.	Denatured spirit.
80.	Artificial cotton and silk fabrics. 인공 면화, 견직물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81.	Fabrics of mixed and or blended materials.
82.	Paper, paprpulp cardboard-mak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종이, 제지용펄프,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
83.	Rice mill, wheat flour mill, other cereal grinding and mill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4.	Sugar mill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85.	Saw-mill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밀링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
86.	Machinery, not elsewhere specifie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
87.	Refigerators, freezers and ice-boxes. Refigerators, 냉동고 및 얼음 상자
88.	Commodities, not elsewhere specified. 다른 곳에서 지정되지 않은 물품

**SCHEDULE 5. GOOD CHARGEABLE TO TAX 25 PERCENT**  
**25퍼센트로 청구되는 재화**

- (1) If the goods are those imported from abroad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Landed Cost.
- (2) If the goods are those produced within the State th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Sale Receipt.

- (1) 물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양륙비용에 부과된다.
-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은 판매수익에 부과된다.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1.	Tinned Provisions.
2.	Isinglass. 부레플
3.	Cocoa powder. 코코아 분말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4.	Toffee and chocolates.
5.	Pipe Tobaccos.
6.	Betel chewing preparations.
7.	Floor Polish.
8.	Cinematographic films, exposed.
9.	Perfumery and toilet requisites, other than medicated powder.
10.	Plywood containing teak and of teak. 티크를 포함한 합판
11.	Teak conversions.
12.	Wood flour tiles.
13.	Leather products other than for industrial use. 산업용 용도 이외의 가죽 제품
14.	Cotton lace fabrics and cotton lace. 코튼 레이스 원단과 면화 레이스
15.	Blankets, shawls, other than of cotton artificial leather. 면화 인조 가죽 이외의 담요, shawls.
16.	Longyis, of silk and artificial and silk mixed.
17.	Synthetic silk ribbons. 합성 실크 리본
18.	Fabrics and made-up clothing of fur and wool.
19.	Silk fabrics. 실크 직물
20.	Motor cycles, scooters and the like.
21.	Motor-cars, light vans, saloons, sedans, light wagons estate wagons and coupe.
22.	Printing press off-set, book binding, block-mak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인쇄기 오프 세트, 책 바인딩,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
23.	Oil-milling machin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오일-밀링 기계, 부품 및 액세서리
24.	Cinematographic cameras, projector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including carbons). 영화의 카메라, 프로젝터, 부품, 그리고 액세서리 (탄소 포함)
25.	Parts and accessories of all sorts of Cameras.
26.	Binoculars, lens. 쌍안경 렌즈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27.	Typewriters, calculating machines, duplicating machines, statistical machines, other office machines, equip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28.	Watches, clocks, chronometer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29.	outlery other than of gold, silver, gold and silver plated.
30.	Furnitures. 가구
31.	Filling cabinets, racks and similar office equipment of iron or steel.
32.	Safe and strong boxes.
33.	Strong room fittings, and cash boxes.
34.	Tarazo tiles.
35.	Radio, Televisions, Video Camera and Video tape Recorders.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카메라 및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
36.	Electric stoves, Electric rice cookers, and Microwave stoves. 전기 스토브, 전기 밥솥 및 마이크로웨이브 스토브
37.	Fibre cases, suitcases and brief cases.
38.	Electric fans, irons, washing machines and water coolers 전기 팬, 다리미, 세탁기와 물 쿨러
39.	Gramophones.
40.	Gramophones records.
41.	Air conditioners.
42.	Ivory, tortoise shell and articles made out of materials of animal origin.
43.	Billiard equipment and requisites. 당구 장비.
44.	Musical instruments. 악기
45.	Recorders, cassette, cassette with radio transisters and tapes.
46.	Domestic electrical equipemnt and appliances not else where specified.
47.	Match. 성냥
48.	Furnace oil.
49.	Wax.
50.	Army Rum.

## SCHEDULES 6.

In respect of the goods contained in the following Schedule, tax shall be charged on the Landed Cost if the goods are those imported from abroad and on the Sale Receipt if the goods are those produced within the State, at the percentage percentage shown against the said goods:

다음 세율표에서 포함된 재화의 관점에서, 재화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에 세금은 양륙비용에 청구된다. 만약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판매수익에 부과될 것이다.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Tax Percentage
1.	Cigarette 담배	75
2.	Kerosene 등유	50
3.	Motor Spirit 휘발유	170
4.	Diesel Oil 디젤 오일	90
5.	Earth Oil	180
6.	Jet fuel 제트 연료	75
7.	Rum 럼	200
8.	Local Brandy 지역 브랜디	60
9.	Brandy. others 다른 브랜디.	200
10.	Local Malt Whisky 지역 몰트 위스키	60
11.	Whisky, others 위스키, 다른	200
12.	Local Gin 지역 진	60
13.	Other Gin, Liquor and the like 기타 진, 주류와 같은	200
14.	Beer 맥주	50
15.	Wine 포도주	50
16.	Tin-le-phyu (Local alcoholic drink) 주석 르 phyu (로컬 알코올 음료)	50

Serial Number	Description of Goods 상품에 대한 설명	Tax Percentage
17.	Country spirit	50
18.	Pearl 진주	30
19.	Jade and other precious stone 옥, 다른 보석	30

### SCHEDULE 7.

For services contained in the following Schedule, tax shall be charged at percentage shown against the said services:

다음 세율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세금은 다음 퍼센티지로 청구된다.

번호	서비스의 종류	과세 기초금액	세율
1.	Railways, waterway, airway and road transport business 철도, 수로, 항공, 도로 운송사업	Total receipts in respect of passenger fares. 여객 운임에 관해서 총수령액	8
2.	Entertainment business- (a) Film or Video Exhibitions (b) Entertainment other than Film or Video Exhibitions. 엔터테인먼트 사업 (a) 영화, 비디오상영 (b) 영화, 비디오 상영 이외의 엔터테인먼트	Total receipts 총수령액	30
3.	Trading business consisting of purchases and sales of goods 상품의 구매 및 판매로 구성된 무역업	Total Sales 총판매액	5
4.	Hotel, Lodging. 호텔, 숙박	Total receipts 총수령액	10
5.	Enterprise for sale of foods and drinks. 음식과 음료 판매 기업	Total Sales 총판매액	10

The Government may direct any producer of goods to collect and pay 5 percent of the proceeds of his sales of goods as tax payable by the trading business according to Serial Number 3 of the Schedule.

정부는 세율표의 3번 항목에 관련된 무역업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재화의 판매 수익의 5%를 징수하도록 모든 재화 생산자들을 감독한다.

No tax shall be payable according to Serial Number 3 of this Schedule on the proceeds of sale of trading business in respect of goods imported from abroad.  
세율표의 3번 항목에 관련된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의 관점에서 무역사업의 판매 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The Government may, where the amount of sale is not large in respect of Serial Number 5 of this Schedule, prescribe the monthly fixed rate as charge of tax.  
정부는 세율표의 5번 항목에 관련된 판매액이 크지 않으면 매월 고정된 율로 세금청구를 지시할 수도 있다.



참고 문헌

[국문자료]

김종상 외1인. 2012.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KOTRA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 『미얀마 투자진출 관련 기본 법제』. 대한상의 발표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2.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얀마』.  
 오윤아 외1인. 2012. 『미얀마의 개혁개방 경과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이호상 외3인. 2011.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장준영. 2010.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완. 2012. 『미얀마의 정치·경제 최신 이슈와 비즈니스 환경』.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대한상의 발표자료  
 정재완 외1인. 2012. 『미얀마의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 의미와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한국수출입은행. 2012.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협력확대 방안』.

[외국문자료]

DFDL MEKONG. 2010. “Myanmar Legal & Investment Guide”  
 Khin Yamon Aung. 2011. “Taxation in Myanmar”  
 Kyaw Ye' Tun. 2011. “Country Report(Myanmar)”

## [웹사이트]

- 미얀마 재무세입부 : <http://www.mofr.gov.mm>
- 미얀마 국세청(내국세국) : <http://www.irdmyanmar.gov.mm>
- 미얀마 투자기업청 : <http://www.dica.gov.mm>
- 버마 변호사협회 : <http://www.big-burma.org>
- DFDL MEKONG : <http://www.dfdl.com>
-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 <http://www.mmr.mofat.go.kr>
-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 <http://www.globalwindow.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koreaexim.go.kr>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world.moleg.go.kr>
-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 헤럴드경제 : <http://news.heraldm.com>
- 매일경제 : <http://mk.co.kr>
- 파이낸셜뉴스 : <http://fnnews.com>
- 미얀마 한인회 : [cafe.daum.net/myanmarhanin/](http://cafe.daum.net/myanmarhanin/)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미얀마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미얀마 세법 등을 2012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미얀마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8

팩스번호 : 02-723-9976

### 원고작성 및 편집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국세조사관 권 종 욱

서울지방국세청 조 사 3 국 국세조사관 구 성 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조사관 박 지 상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397-140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